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關係-統一政策

UN軍撤収 또는 解体案通過時 對 備 策



研究執筆責任 閱 丙 天

(略歷) 서울大學校 文理大 政治學科 卒業 (1956)

國防大學院 教授 (1963)

東國大學校 教授 (1972~現在)

東國大學校 附設安保研究所 所長 (1972~現在)

刊行責任 李 杔 熙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 序 論	1
2 . 韓半島를 위요한 週辺情勢	3
3 . U N 과 韓國問題의 聯關性	19
4 . U N 의 勢力構造의 變化	24
5 . 南北韓의 對U N 戰略比較	29
6 . U . N . 軍撤収 또는 解体時의 問題點	47
7 . 對備策 (韓半島平和定着의 制度化方案)	51
가 . 6.23 宣言과 南北韓關係	53
나 . 北韓의 軍縮 및 平和協定提議의 評價	59
다 . 休戰協定의 對處問題	62
라 . 南北韓一般關係設定	66
마 . 南北韓軍縮問題	71

1. 序 言

第2次大戰以後 世界平和의 大理想을 안고 탄생한 國際聯合은 韓國獨立의 產婆였다.

即 UN은 1947年11月14日 總會 決議에 依拠하여 韓國 統一 政府 樹立을 위한 總選舉를 監視하도록 國際聯合 韓國臨時委員會를 設置하고 이어 1948年2月26日 UN 小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198名의 大韓民國 制憲國會 議員을 선출할 5.10選舉를 監督함으로써 大韓民國樹立에 決定的 役割을 하였다.

그後 팽창주의적 소련 共產主義를 등에 업은 北韓이 韓半島의 赤化를 武力으로 달성코자 1950年 6月25日 不法南侵을 敢行하여 所謂 韓國動亂을 일으켰을때도 UN은 侵略勢力을 격퇴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함에 있어서 主導的 役割을 擔當하였다.

UN安全保障理事會는 6月27日 決議를 통해 國際聯合 加盟國들에게 北韓의 軍事的 攻擧를 격퇴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기 위하여 必要的 援助를 大韓民國에 提供하기로 권고 하였고 또한 7月5日字 決議를 根拠로 하여 國際聯合軍 司令部를 設置하였으며 이러한 措置를 통해 UN은 北韓侵略勢力을 격퇴하였다.

이와 같은 歷史的 背景下에 設置된 駐韓UN軍은 오늘날 까지 韓半島 平和維持에 重大한 役割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駐韓UN軍의 平和維持 役割은 極東平和와 安全의 基本的 要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 赤化라는 基本目標을 가진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赤化 目標을 爲하여 基本的 障礙가 되고 있는 駐韓UN軍의 撤収를 休戰以來 오늘날까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의 駐韓UN軍 撤収主張은 UN會員國인 多數 平和愛好 國家들의 賢明한 判斷으로 因해 UN에서 效果的으로 牽制 당하여 왔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 國際情勢가 冷戰으로 부터 平和共存, 緊張緩和에의 方向으로 大變動을 이루게 되자 UN의 勢力構造도 中共의 UN參加를 直接的 契機로 하여 커다란 變動을 마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UN의 勢力構造의 變化는 UN과 韓國과의 關係에 重大한 影響을 끼치고 있으며 共產側主張인 駐韓UN軍 撤収案에 對해서도 再考를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2. 韓半島를 위요한 週邊情勢의 變化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世界的인 國際政治 秩序는 急激한 變動의 禍中에 들어 갔다.

即 美를 中心으로 한 西方勢力과 蘇聯이 支配하는 共産制으로 兩分 對立되었던 戰後의 冷戰體制는 崩壞되고 平和共存과 緊張緩和를 追求하는 東西接近의 氣運抬頭 및 政治的 多元化로의 轉移를 露示하면서 美國 日本 蘇聯 中共 및 西歐로 形成되는 5極體制의 定立을 指向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을 權力政治 構造面에서 볼것 같으면 힘의 多樣化, 多邊化 및 블력化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各國은 이미오르기 보다는 國家利益을 내세우는 國際的 實利主義에 立脚하여 自國의 利害得失에 따라 行動하게 되어 이대 오르기를 같이 하는 同盟國間에서도 利害가 相衡하여 여러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世界秩序는 不安定狀態에 이르고 있다.

傳統的인 友邦의 概念도 달라지고 있고 敵과 同志의 區別도 애매 모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自由主義 共産主義라는 理念을 기준으로 하여 形成된 既存 同盟體制들도 互解의 局面에 到達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政治的인 새로운 論理의 展開가 나타나고 있는 具體的인 實例로서는 4半世紀의 絶緣과 對立을 清算하고 雙方間의 和解를 摸索한 1972年 2月の 美 中共間의 北京頂上會談, 戰後 冷戰의 焦點이 되어 世界紛爭의 씨앗이었던 獨逸統一問題, 베르린問題를 解決하고 東西獨間의 基本條約의 合意를 가져온 東西獨頂上會談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1970年代에 들어와서 전개된 一連의 움직임과 變化는 5極體制라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定立을 向한 歷史的인 契機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國際政治의 構造的 發展相을 展望하여 美國의 닉슨大統領은 1972年 年頭 世界情勢에 關한 敎書에서 五大國時代의 到來를 公式的으로 言明하였고 이어 五大國이 바야흐로 힘의 均衡體制를 形成하는 段階에 있다고도 말하였다.

世界 平和가 保障되는 時代는 힘의 均衡의 時代라 하고 「本人은 강력하고 건전한 美國, 유럽, 소련, 中國 및 日本이 각기 상호 均衡을 취하여 서로 敵對하지 아니하고 對等한 균형을 취할 수 있다면 세계는 보다 안정되고 보다 나은 세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1970年代 그리고 아마도 그 以後의 國際秩序를 평가할 수 있게 될 5強關係의 基本性格을 檢討해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點은 이러한 5角關係가 不均衡한 力關係에 그 基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고 當分間은 對等한 關係를 갖게 되었다고는 評價할 수 없을 것이다.

即 美國과 蘇聯이 各己 政治大國이고 經濟大國이며 또 軍事大國인 同時에 그 影響力을 汎世界的으로 行使하는 超大 強國이라는 事實에 異見을 提示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中共, 日本 및 西歐의 '力量은 絶對的인 意味에서나 그 影響範圍에서나 限定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다.

中共은 美.蘇 支配体制에 挑戰하여 이에 對抗할 수 있는 第2의 政治勢力을 形成 領導하기를 바라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美蘇에 있어 北京의 영향력은 아세아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実情이다.

또 中共은 龐大한 國土와 人口를 갖고 있으나 經濟的으로 落後되어 있고 核武器의 運搬手段의 開發 및 完成을 서두르고 있지만 海外에서 近代戰을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西歐諸國과 日本은 基本的으로 經濟勢力이며 그 영향도 各己 歐洲와 아세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西歐諸國은 特히 1960年代 後半에 접어들면서 경제문제와 몇몇 지난날의 植民地와의 特殊한 政治的 關係를 除外한다면 事實上 世界 列強으로서의 役割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日本도 경제적으로는 世界 第3의 地位를 確保하기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保有 軍事力은 微弱할 뿐만 아니라 強力한 政治的인 役割의 擔當마저도 回避하고 있는 実情이다.

따라서 美.蘇와 中共, 日本, 西歐間의 力量 및 그 영향半徑은 甚로 遠저한 차이가 있다고 아니 할수 없다.

現代의 軍事力은 너무나 巨大化되었기 때문에 그 累積的 効果는 적지 않게 消失되었으며

(1) 또 核抑制力이 作用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強大國이 政治的 目的의 達成을 爲하여 軍事的 手段을 使用하려는 傾向은 減少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5極体制의 登場 乃至 成立이 論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이센 教授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特別 軍事面에 있어서의 兩 超大強國과 餘他 強大國家들과의 力量의 差異는 當分間 오히려 擴大될 것이 豫算되고 있기 때문에

(2) 새로이 展開되고 있는 5強体制은 不均衡한 力關係에서 出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5強國間의 相互交流 및 協力 關係의 本格的인 擴大를 들 수 있다.

冷戰時代에 있어서는 軍事同盟에 基礎를 둔 美國, 西歐, 美, 日 및 中, 蘇關係만이 密接하고 活潑하였으나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冷戰의 解氷과 中蘇對立의 深化로 中蘇關係 代身 美, 蘇關係가 定立되게 되었다.

그러나 1972年 2月の 北京會談의 餘波로 形式에 그쳤던 西歐와 中共과의 關係가 擴大되었고 日 中共國交가 樹立되었으며 日, 蘇關係 特別 경제交流가 本格化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5月の 모스크바會談은 美, 蘇共存關係를 再確認하고 1次的인 戰略武器制限協定과 經濟交流의 劃期的인 擴張을 約束하게 만들었음뿐만 아니라 伯林協定과 歐洲安保存議를 確定함으로써 西歐와 소련間과의 交流의 活潑化를 가져 왔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한 日本의 西歐로의 경제적 進出이 이루어지기 始作하였으며 強大國間의 最惡의 關係로 殘存되었던 中 蘇關係에 있어서도 적어도 軍事의 衝突과 小康狀態와 國家關係의 表面

上 回復을 가져 오므로서 지난날 침체를免치 못하였던 5強關係는 1972年에 접어들어 政治關係가 正常化乃至 活潑化되고 경제 交流가 週期的으로 增大될 徵候를 보이게 되게 됨에 따라 相互 依存性 마저 지니게 될 可能性을 갖게 되었다.

세번째의 새로운 5強關係의 特徵으로는 強大國 相互間의 戰爭 可能性의 顯저한 減少를 들 수 있다.

冷戰期에 있어 美國을 中心으로 한 西方勢力과 소련을 中心으로 한 共產陣營間의 軍事衝突의 可能性은 때로는 深刻한 것이었으나 強大國間의 戰爭이 없었던 것은 基本的으로 미소간의 軍事的 抑制力의 相互作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相互 第1擊力을 確保하지 못하고 있는 軍事的 均衡으로 美.蘇는 特히 쿠바에서의 對立을 分水嶺으로 熱核戰爭을 回避하고 共存關係를 本格的으로 摸索하게 되므로서 超大強國間의 軍事衝突의 可能性은 顯저하게 減少되었다.

또 越南戰의 擴大에 따라 示峻되었던 美.中共 對決도 北京에서의 和解를 契機로 그 勃發可能性이 稀薄하게 되었으며 中蘇關係도 統制된 對立으로 그 性格을 變하게 되므로서 이제는 強大國間의 戰爭可能性을 그어느때 보다도 적은 것으로 評價할수 있게 되었다.

네째로는 國家가 保有하고 있는 力量에 따라 그 深度는 다르겠지만 強大國間의 새로운 相互 경제關係를 상경할 수 있것 되었다.

東西獨 基本關係는 그 強度가 弱化되었더라도 그때로 存續되었지만 강대국 들은 各自의 利害關係에 따라 卽 條件 場所 및 時間

的 要素에 따라 相互提携 또는 牽制하는 새로운 關係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越盟에 對한 支援原則에 對해서는 中蘇가 合意 (勿論 具體的 努力은 低調하였다.) 하였지만 印 파쟁에 있어서는 美. 中共 對 蘇聯의 對立狀況이 나타났던 것을 卽例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積極的인 對아세아進出에는 美. 蘇. 日이 共同 견제하고 蘇聯이 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시도에는 美. 中共 日이 共同對處하는 狀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共產세력의 확대에 對해서는 美 西歐 日이 같이 努力하고 日本의 單國化傾向과 美蘇 支配體制에 對해서는 餘他 諸國이 같이 反對 도전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이와 併行하여 陣營間 그리고 陣營內에 있어서는 活潑한 경쟁關係가 전개될 것이다.

卽 美. 蘇間에는 전략 무기 제한에 관한 모스크바에서의 1次的인 합의에도 不拘하고 치열한 군비경쟁이 계속된다고 볼수 있으며 陣營內에서는 소련 및 中共間의 政治的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 미국 서구 그리고 日本사이의 경제경쟁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후퇴에 따라 조성될 수 있는 세력 공백의 占拠를 爲한 蘇聯, 中共 및 日本間의 경쟁이 계속 내지 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特徵은 국가이익의 중요시 경향과 민족주의의 대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對外問題보다 國內問題를 重要視, 優先視하고 陣營 및 우방의 이익을 경시하며 또 지역협력, 지역적 통합 및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과거보다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외공약설보다 국제안보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미국내의 여론, 영국 등의 EEC加入에도 불구하고 지난날보다 弱화된 歐洲統合運動, 東西를 막론하고 弱勢를 보이고 있는 軍事同盟을 包含한 諸協力機構, 그리고 無力化되고 있는 유엔은 이와 같은 世界的인 추세를 反映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은 形態로 展開될 것이 豫想되는 5極體制를 中心으로 한 世界秩序는 적어도 당분간은 미소관계가 핵을 이루겠지만 아마도 美. 蘇. 中共 그리고 西歐 日本으로 形成되는 두개의 3角構造가 세계질서와 국제문제의 方向 설정에 보다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即 美. 소. 中共의 3角關係는 平和共存 및 軍縮과 軍備競争과 같은 世界 政治 및 軍事에 그리고 미 서구 일본으로 形成되는 3角關係는 세계경제에 각각 결정적인 영향과 역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정치와 기본질서는 미국 소련 서구 中共 및 일본으로 形成되는 5強體制에 있다고 言及되며.

그러나 韓半島問題에 直接的 聯繫을 가진 匪細匪 질서는 美 蘇 中共 日本의 相互作用에 立脚한 4強體制에 있다.

닉슨 美國大統領과 그의 補佐官 키신저博士가 主張하고 指向한다는 匪細匪에 있어서의 4強秩序는 理論上으로 볼때는 적어도 균형된 力量과 균형된 作用에 立脚하고 一方的인 同盟이나 對立을 배제할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

即 一般的인 4強關係의 모형은 균형된 힘에 立脚한 상호견제의 作用에 立脚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美國 蘇聯 中共 및 日本으로 구성되어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아세아의 4強關係는 기본적으로 4強大國이 各其 保有하고 있는 力量과 영향력이 차이를 보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4強大國 사이에는 치열한 對立과 比較的 긴밀한 同盟關係가 存在하기 때문에 연재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豫見될수 있는 4大國關係의 상호 作用과 양상은 一般的인 모형보다는 變型된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첫번째의 이유로는 4強大國이 保有하고 있는 力量의 차이에 새로이 전개되는 4大國關係에 그 基礎를 두고 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戰後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 공산세력 확장의 억제와 沮止에 決定的인 역할을 담당하여온 美國은 越南에서의 政治的 苦戰을 계기로 이지역에 對한 軍事的 寄與의 減縮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편 西方勢力의 後退에 따라 造成될 수 있는 勢力 空白의 占據와 中共의 勢力擴張의 견제를 위하여 이지역에 대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소련의 영향력은 현단계에 있어 미국과 比肩될수 없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美國과 蘇聯이 자기 政治大國이고 경제大國이며 同時에 軍事大國이며 특히 아시아의 政治的 장래와 군사적 운명에 결정적

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中共과 日本의 力량은 비록 向上되고 있지만 美·蘇의 力量과는 絶對的인 意味에서 比較될 수 없다.

即 中共은 美·蘇 支配體制에 도전하여 이에 對抗할 수 있는 第3의 政治勢力의 形成과 영도를 바라고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實際에 있어 中共의 能力은 相當히 제한된 것이라고 평가 하지 않을 수 없다. 中共은 龐大한 國土와 人口를 保有하고 있으나 經濟力量은 微微하며 核武器의 운반수단의 開發과 完成을 서두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海外에서 近代戰을 수행할 수 있는 軍事力量을 保有하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지난날에 比하여 中共의 國際地位와 發言權은 向上 強化되고 있으나 北京의 力量과 영향력은 政治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日本은 경제적으로 世界 제3의 位置를 確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나 아직도 保有한 군사력은 輕微할뿐만 아니라 能動的인 政治的 役割의 擔當은 現段階에서는 回避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美·蘇와 日 中共間의 力量 및 그영향半徑은 兇로 懸저한 差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신저는 American Foreign Policy (1969)에서 現代의 軍事力은 너무나도 巨大化 되었기 때문에 그 累積的 效果는 적지 않게 消失되었다. *고 指摘한바 있으며 또 實際에 있어 強大國들은 核의 억제 作用을 고려해서 政治的 目的 達成을 위하여 軍事적 手段의 使用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現狀이기 때문에 아와 같은

4 強体制의 成立이 指摘되고 있다.

둘째로 4 大國 間에는 過去에 比하여 活潑한 相互 交流 및 協力關係가 展開되고 있지만 이는 現存하는 同盟 및 對立關係로 限定的인 意味 밖에 止니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 強國의 相互關係라고 하면 6 個의 關係를 想定할 수 있는. 바 冷戰時代에 있어서는 主從의 軍事同盟을 基礎으로 한 美·日 및 中蘇의 關係만이 密接하고 活潑하였다.

1960 年代에 접어들면서 中·蘇 對立이 理念, 紛爭의 次元을 벗어나 國家의 對立으로 擴大 深化됨에 따라 또 쿠바 危機를 轉機로 美 蘇共存關係가 漸次 本格化되게 됨에 따라 冷戰時代에 存在하였던 中 蘇關係가 美 蘇關係에 代替됨으로서 4 強國의 相互關係는 如前히 二個의 關係만이 存在하였다.

그런데 1970 年代에 접어들면서 美 中 共 間의 和解와 이의 餘波는 日 中 共 國交 樹立을 가져왔고 日 蘇 間의 關係定立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날에 있어 活潑치 못하였던 4 強國 間의 相互關係는 強大國 間의 相互關係中 最惡의 狀況으로 殘存되고 있는 中 蘇關係를 除外한다면 政治的 關係가 正常化되고 經濟面에서의 交流가 翻期的으로 擴大됨으로서 相互 依存性 마저 지닐수 있게 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비록 相對的으로 相互關係가 擴大되었다고는 하지만, 日本과의 同盟 및 中·蘇 間의 對立을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고 利用하고 있는 美國을 除外한다면 強大國 間의 相互關係는 적어도

當分間 限定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中共으로 하여금 4半世紀에 걸친 絶縁과 對立을 청산하고 帝國主義의 總本山인 美國과의 和解를 서두르게 하고 台灣問題를 未解決로 남긴채 美國과의 事實上的 外交關係를 樹立하게 만든 가장 큰 要因은 北方으로 부터의 威脅을 견제 하자는데에 있었다고 수 있다.

또 蘇聯으로 하여금 歐洲情勢의 安定 및 定着化를 서두르게 만들고 너스 大統領의 越盟 海岸의 封鎖라는 劇的 措置에도 不拘하고 豫定대로 모스크바에서 美國과의 共存關係를 確認 擴大하고 戰略 武器制限에 關한 1次的 合意, 相互均衡減軍論議로서 착수 그리고 擴大된 경제 協力을 모색하게 만든 가장 큰 要因도 亦是 中.蘇對立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中 蘇間의 國境地帶에서의 軍事的衝突은 小康狀態를 示顯하기 始作하였으며 外交關係를 包含한 國家關係가 回復되고 國境會議도 再開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中 蘇關係는 비록 理性을 되찾기 始作하였다는 局面도 없지 않지만 國境地帶에 있어서의 雙方 軍力의 增強과 계속되는 雙方間의 政治的 論爭을 고려한다면 中.蘇關係는 強大國關係中 最惡의 狀況이라는 것을 否定하기는 困難하다.

따라서 亞細亞 4強關係에 있어 存在하는 두 強大國間의 對立關係는 4強의 一般의 게임 模型을 變形시키는 가장 큰 要因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세계제 3위 경제大國으로 성장된 日本의 向背는 많은 注目의 對象이 되고 있다.

一方에서는 美日間의 經濟競爭 乃至 對立關係가 雙方間의 政治的 紐帶와 軍事同盟을 威脅하게 될 것이라는 評價를 하는 見解가 있는가 하면 日本의 中共 또는 蘇聯과의 接近 乃至 密着을 憂慮하기 始作하는 例도 없지 않다.

그러나 美·日關係의 惡化와 東京의 모스크바 또는 北京과의 接近에는 限界性이 있다고 評價할 수 있는 여러 根拠가 있다고 볼수 있다.

먼저 美·日關係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日本內에는 美國과의 安保體制를 批判하거나 美國과의 經濟戰爭을 우려하는 관측도 많지만 日本內의 政治版圖에 劇的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 限 東京은 美國과의 紐帶를 外面 할 수 없는 것이 現狀이 아닌가 할 수 있다.

먼저 安保關係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美·蘇間의 核 抑制力의 相互作用과 共存關係의 戰爭은 日本에 對한 蘇聯 또는 中共의 核改良 또는 在來式 武器에 依한 軍事挑發의 可能性을 顯格히 減少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이 非現實的인 非武裝中立을 追求하지 않는 限 美國의 核 兩傘은 便利하고 경제적이며 必要한 存在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의 核戰力은 共產威脅이 存在하는 限 必要한 것이며 경제적 負擔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方便이며 改憲이나 本格的인 再武裝을 하기 힘든 政治風土를 볼때 便利한 存在이기도 하다.

또 經濟的으로 볼때 美國의 對日態度는 日本의 反撥을 야기시
지만 經濟大國 특히 무역大國인 日本으로서 美國과의 經濟關係는
도저히 輕視할 수 없다.

即 輸出과 輸入에 있어 共히 약 30%를 美國에 의존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對美關係의 惡化 보다는 現象維持가 보다 바람직한
方向이기 때문이다.

勿論 日本의 美國에 對한 自主性은 提高될 것이나 基本的으로
日本으로서는 美國과의 경제적 그리고 軍事的 優대를 지속하지 않
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日本의 中. 露 中에서도 中共과의 接近 乃至 密着 可
能性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日本은 美國에 알질러 中共과 修交하였지만 中共과의 政治的 紐
帶나 密着의 招來를 困難케 만드는 다음과 같은 諸制約이 作用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로는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既存의 美國과의 關係를 저버
릴수 없는 日本의 立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對 中共經濟 交流의 限界性을 생각할 수 있다.

中共이 未開發의 龐大한 資源을 保有하고 있고 8億의 人口를 갖
고 있지만 個人當 所得이 80~90 弗인 中共으로서는 外貨의 制約으
로 無制限 輸入을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지 못하다.

또 中共이 그와 같은 能力이 있다고 하더라도 中露紛爭에 다른
係聯과의 經濟交流의 斷絶로 쓰라린 경험을 맞은 中共이 日本을

包摂한 어느 國家와의 穩當된 經界關係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더 消費財의 輸入을 크게 증대시키리라고도 期待하지도 않고 있다.

세번째로 日本은 對蘇關係를 配感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있다.

激甚한 對立을 보이고 있는 中蘇關係를 考慮할때 日本이 中共과의 過度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蘇聯의 강력한 反對를 초래할 것이므로 日本은 對中共關係에 있어 蘇聯의 態度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번째로는 長期的인 日·中共間의 經界關係를 생각할 수 있다.

中共의 對亞細亞 進出의 主武器는 政治力量에 있는 反面에 日本은 經界적 側面을 내 세우면서 政治的 進出과 役割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때 日本과 中共은 各其 經界력과 政治力을 바탕으로 亞細亞 地域에 있어서의 영향력 擴張을 둘러싼 경쟁 내지 충돌을 이룰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드린다면 日本과 中共은 협조자 이라기 보다는 경쟁 내지 競合자의 立場에 서게 된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雙方은 體制와 理念의 차이에 不拘하고 共存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體制上的 차이는 共存을 가능하게 만들런지는 모르지만 간접한 협조의 阻害要因이 될 수 있음은 勿論이다.

이렇게 볼때 日·中共關係는 外交關係가 수립되고 經界 및 文化交 流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이 政治的 協力으로 轉移되기에는 많은

制約이 作用이 되어 그限界性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소련과의 接近 乃至 密着에도 日 中共關係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制約이 作用되고 있다.

그 첫째로는 日本의 美國과의 유대관계에 있다.

即 安保面에서나 경제면에서나 東京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모스크바를 선택할 수 없다는 現狀은 自動的으로 日 蘇接近의 限界를 提示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中 蘇對立을 고려할 때 日本은 一方的인 對蘇接近을 推進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未解決된 平和條約 및 領土問題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宿題의 解決을 田中首相은 豫定된 모스크바訪問을 통하여 모색하려고 있지만 蘇聯은 日本이 要求하고 있는 北方領土問題에 있어 讓步를 한다는 것은 蘇聯 指導者들의 演說, 諸聲明과 論評, 그리고 中 蘇國境 紛爭을 생각할 때 現段階에서는 至極히 想定이 困難하다.

끝으로는 亦示 中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體制와 理念의 차이는 日 蘇 接近에 相當한 阻害要因으로 作用된다고 想定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日 中共關係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日 蘇接近에도 好轉되고 擴大되고 있는 交流가 政治的 努力으로 轉移되기에 限界性이 作用하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力關係를 基礎로 하여 強大國間에는 새로운 相互 牽制의 關係가 展開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即 基本的인 東西關係는 그 強度가 弱化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持續되겠지만 強大國 各其가 지니는 特定한 利害關係에 따라 말을 바꾸어 表現하자면 場所 案件 및 時間的 要素의 配合에 따라 相互間의 새로운 提擄 및 牽制關係가 形成 展開될 것으로 보인다.

即 中共의 過度한 對아시아 進出에는 美·日·蘇가 共同牽制할 것이며 소련의 翻期的인 영향력 확대시도에는 美·中共·日이 共同으로 協力 乃至 對處하는 狀況을 豫見할 수 있을 것이며 日本의 軍國化 傾向에는 美·蘇·中共이 다 같이 反對할 것이며 또 美·蘇 支配體制에 對해서는 中共과 日本이 反撥을 하기 始作할 公算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이 展開되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4大強國의 力關係는 熱核戰爭의 回避 即 現狀維持가 그 基本이 될 것이며 過去와는 달리 陣營의 利益보다는 國家의 實利를 重要視하는 脫 이데올로기의 性格이 濃厚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自体利益의 守護 乃至 伸張을 爲한 手段도 過去에는 軍事的 方便이 主로 使用 또는 강구되었으나 이제는 政治 特히 경제 手段의 使用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3. 유엔과 韓國問題의 聯關性

第2次 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카이로 宣言, 포스담 宣言 等 國際協約에 依해 約束된 韓國의 獨立問題가 國際聯合으로 그 무대를 옮기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방해 때문이었다.

日本의 항복으로 주한 日本軍의 무장해체를 위하여 南北韓으로 진출했던 미국과 소련은 1945年 12月 美·英·蘇 3國의 모스크바 會議에서 韓國을 獨立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合意事項을 이행키 위하여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소집되고 이 위원회는 韓國 임시정부수립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韓國의 민주정당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소共委, 卽 소련과 협의를 통하여 韓國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미국의 노력은 2年余에 걸친 기간을 낭비했을 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卽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할 韓國 政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 등을 놓고 소련이 韓國의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共產主義 政黨만을 協議對象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함으로써 모든 정당을 협의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美·蘇共委는 소련의 비타협적이며 시간만을 지연시키려는 기도로 인하여 애초부터 韓國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구

였던 것이다.

어쨌든 국제협약으로 누차 약속되었던 한국의 獨立 문제가 미·소 양국의 의견 不一致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되자 미국은 1947年 9月 17日 유엔 미국대표단을 통하여 한국 獨立 문제가 제 2차 UN총회의 의제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即 한국 獨立의 문제를 미·소간의 문제에서 국제연합의 문제로 이관할 것을 요청한 셈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는 한국문제를 심의한 끝에 1947年 11月 14日 통일정부수립을 위하여 실시한 총선거를 감시하도록 국제연합 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의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이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에 의뢰하는 것 자체부터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자유선거 실시도 거부하고 이를 감시할 위원단의 북한 出入마저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이 委員會는 국제연합이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는 소총회가 이 문제를 심의한 결과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내에서 만이라도 자유선거를 실시하도록 1948年 2月 26日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年 5月 10日 國際聯合의 감시아래 남한에서만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8名の 제헌국회의원(선거수는 200이었으나 치안관계로 제주도의 2개구가 1949年 5月 10日에 실시되었음)이 선출되었고 이어 5月 31日에는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 공포하여 8월 15일에 대한민국 수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게 되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獨立을 선포한 以來 국가의 기틀을 바로 잡고자 노력을 했지만 국토의 양단과 이로 인한 이데오르기의 對立등이 주는 영향은 건국초기의 신생국으로는 너무나 큰 짐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냉창주의적 소련공산주의를 등에 업은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를 구실로 달성코자 1950년 6월 26日 不法南侵을 감행하여 한국동란이 발생했다.

한국동란이 發生하자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북한군이 38선 以北으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국제연합에 배하여 가맹국들이 협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원조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연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남침을 계속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6月27日 국제연합가맹국들에게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기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우지일랜드, 미국, 영국, 필리핀, 이디오미아, 터키, 캐나다, 타이, 콜롬비아, 남아연방, 그리스 등 16개국이 7월 5일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된 국제연합군 사령부에 병력을 파견하고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 5개국은 의로만을 파견하는 등 한국에 대한 不法侵略세력을 격퇴하기 위하여 국

제연합은 집단적 원조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조 조치로 인하여 한국은 북한에 의하여 주밀하게 사전 준비계획에 따라 아무 경고도 없이 개시된 침략행위(1950年 9月4日 字 韓國위원단, 보고서)를 격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국제연합총회는 1950年 10月7日 前 한국에 獨立된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전쟁의 재해로부터 한국을 구호하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델란드, 파키스탄·필리핀, 타이 및 터키 등 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엔커크)을 설치토록 결의하고 이해 12月1日에는 전란의 피해를 입은 한국을 구호하고 파괴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특별기금으로 국제연합 한국재정단(엔크라)를 창설할 것을 결의한다.

국제연합은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신속한 조치로 北韓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중공의 介入으로 한국의 통일을 완수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으며 1951年 봄부터 제기된 휴전준제가 2年 이상이나 달다가 1953年 7月 27日 타결됨으로써 휴전협정이 체결 포성이 벗겨진 것이다.

휴전이 成立된 후 휴전협정 제 60 항에 따른 政治會談이 1954年 4月 26日 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한국통일문제를 다루었으나 공산측이 한국에서의 국제연합 역할을 부인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만을 반복함으로써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채 6월에 결렬되고 말았다.

제네바회의에서 한국代表가 제시한 통일方案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은 이른바

국제연합方式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의 주축이 되고 있다.

- (1) 한국문제 해결에 관한 유엔의 충분하고, 정당한 권한 인정
- (2) 남북한인구비례 대표제에 의한 자유선거 실시
- (3) 통일 獨立民主 한국이 成立되어 유엔의 使命이 완수될 때까지 유엔군의 계속 주둔

국제연합총회는 1954年 12月 11日 제네바 政治會談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한국에 있어 국제연합의 목적은 평화적 方法에 의하여 통일 獨立民主한국을 실현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1955年 11月 29日에 국제연합方式에 따라 한국문제의 해결을 계속 촉구할 의도를 재확인하여 이후의 총회가 열릴 때마다 비슷한 결의가 채택되기에 이른 것이다.

4. U N 勢力構造의 變化

1945年 U N 創設當時 會員國의 總數는 51 個國이었으며 이때 유엔총회의 主要決定은 地球上의 唯一한 核保有國인 美國 主導下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50年代 初葉에 소련이 核開發에 成功하여 美國과 背境 爭을 시작했고 그에 뒤이어 영국, 프랑스가 核保有國이 되었고 60年代 初葉에는 中共도 核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 결과 美國의 唯一 核保有國의 地位는 붕괴되었고 동시에 美國 意思中心의 유엔기구 운영에도 한계점이 들어났다.

이러한 강대국관계의 변화는 유엔内部情勢 變化의 基本的인 質的 要因인 것이다.

이와 同時에 유엔의 기능과 성격을 빈질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要素는 會員國의 數의 增大이다.

창설당시 51 個國으로 구성된 국제연합기구는 그 세력分布에 있어서 歐美諸國과 亞阿勢力間의 비율은 40 個國對 11 個國으로서 80% 對 20%이었던 것이 1956年과 1957年사이 창설당시 보다 31 個國이 증가하여 51 個國對 31 個國으로서 62% 對 37%로 증가했고 1963년에는 29 個國이 더 증가하여 非 亞阿세력과 亞阿勢力間의 比率은 56 個國對 55 個國으로서 그 차이는 不過 1 個國이었고 1970년에는 총 회원국 130 個國으로서 그 數는 역 전하여 56 對 74가 되어 43% 對 57%라는 亞阿勢力의 우위

를 나타내게 되었다.

창설당시 51 個國이 1972 年에 이르러 132 個國으로 증가. 거의 2.5 배 이상이 증가하여 各 地域別 特히 亞阿勢力 및 南美諸國의 流動의 表決行態는 國際聯合의 세력구조와 기능상의 변질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戰後, 美·蘇의 兩極化 體制와 국제연합을 中心한 양대국의 外交的 각축에서 소련은 不過 6 個國의 共產勢力을 유지하였을 뿐 美國은 NATO 諸國과 英聯邦 及 南美諸國을 聯合시켜 39 個國의 代表를 움직일 수 있어 총회를 압도하고 있었으나 1956 年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의 諸中立群이 국제연합에 대거 가입함에 따라서 소위 非同盟세력이 美·蘇의 양국세력을 견제하는 새로운 第3 세력으로 등장하여 UN기구의 운영과 기능에 변화를 초래케 하였다.

다시 말해서 43 표정도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도 이젠 전과 같이 소련에 대해 3분의 2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戰後 10 余年동안 소련은 총회 또는 安保理事會에서 결방적인 小數세력밖에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100 余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自國의 利益을 도모할 수 없었으며 특히 총회의 決議等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젠 소련도 中立國들의 票를 확보 3 分の 1 以上을 지배하게 되어 自國의 不利한 決議안의 3 分の 2 선 통과를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총회의 투표형태변화는 亞阿地域 國家들의 대적·가입으로
기인된 것으로서 현재 50 個國以上으로서 美·蘇兩國에²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이 되고 있으며 더우기 종래의 소극
적·性格을 탈피하고 美·蘇對立에서 기인하는 분쟁문제를 數的 壓
力으로 국제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시도하고 있는바, 例로서 쿠
바사태와 中·印國境紛爭 등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71年 中共이 自由中國을 축출하고 총회의
加入은 勿論, 安保議의 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第3 勢力的 대변자로 자처하는 中共은 미·소 양대 세력간에서
방황하는 非同盟세력을 규합하고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새로운 中共권의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新生 多數의 非同盟國과 中共의 UN加入은 국제權力
構造의 多元化라는 계거를 만들어 주고 있거니와 南美와 아프리카
및 아세아 3대륙에 침투하여 세력을 확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
려는 中共권, 美·蘇 추종형태에서 벗어 나려는 亞歐권, 英聯邦권,
東歐권, 自由아시아권, 아랍권, 아프리카권, 중남미권 등으로 地域的
集團勢力으로 政治的 多元化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西歐 植民地下에서 독립한 新生 亞阿諸國들은 主權平等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數的 壓力을 행사하여 自國의 利益을 추구하려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西次統合을 추진시켜 유엔內에서 또 하나의 세력권形成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엔의 양적變化는 종래의 유엔機構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변경시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변화물 가져오게 되었다.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阿世력의 등장은 총 132個國으로 구성된 會合體의 효율적 운영을 곤란케 하여 33個國으로 구성된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회원국을 代表하여 구성한 것으로 효율적 협상과 결정수단으로서는 비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數的증가는 회원국의 과다에서 오는 경험과 견해의 다양성때문에 유엔의 個別行動 조절기능이 어렵게 된 점으로 유엔 目的의 우선순위 결정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兩大세력의 政治的, 理念的, 倫理的 태도에 무관심하여 平和증진 문제나 평화과괴문제 등에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에서 월남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 역시 中共이 介入하고 있는 그 戰爭에 처하여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미국이나 국제적 여론으로 하여금 中共을 協商테이블 또는 유엔기구으로 끌어 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핵능력을 보유한 中共의 유엔에의 등장은 中·蘇의 새로운 갈등 対立으로 접어들게 하였고 西方세력간의 균열은 유엔内外에서 새로운 전제와 균형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5. 南北韓의 對 UN 戰略比較

가. 韓國의 對 UN 外交戰略

韓國은 政府 樹立 以來 對 UN 關係에 있어서 地球上에 있는 다른 어느 分斷國家들에서도 볼 수 없는 特殊한 關係를 맺어 왔다.

우선 우리나라는 政府 成立의 正統性의 根拠를 UN 총회의 결의에서 얻었다.

同時에 이를 背景으로 分斷된 한반도의 統一問題는 UN이 解決해야 할 目的 課題로 定義시키게 되었다.

이 점에서 UN은 우리나라의 獨立 및 統一問題에 密接히 關係를 맺었다. 그러나 UN과 韓國과의 關係는 단순히 이같은 名分論的 紐帶關係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6.25 動亂을 계기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北韓 共產集團을 侵略者로 規定함과 同時에 UN軍을 파견키로 결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安全과 平和維持의 役割을 맡게 되었다.

더우기 1953年 韓國 動亂을 종결시키는 休戰 條約에서 UN軍 司令部가 停戰체결의 一方 당사자가 됨으로써 통일문제와 아울러 한반도의 平和회복과 安全유지의 과제도 UN이 解決해야 할 目的 課題로 定義되었던 것이다.

지금 地球上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越남, 中國 등 分斷을 止揚하고 統一을 成就하려는 民族的 目標을 지닌 4個의 分斷

國이 있지만 이中 UN이 統一과 平和維持라는 課題를 맡고 있는 分斷國은 우리나라 뿐인것이다.

이 때문에 UN은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平和통일 努力의 一環으로서 國聯聯合 한국통일 부흥위원단을 존치시키고 있고 平和回復과 안전 유지라는 目標을 追求하기 위해 UN軍 司令部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난 4 한세기 동안 外交의 主要目標을 UN을 통한 統一促進 및 平和保障에 두었으며 所謂 盟邦 外交, 紐帶 外交도 其實은 對 UN 外交를 뒷받침하는 一聯의 對外活動이 었다.

우리의 이같은 立場은 東西間에 冷戰이 高潮되고 西方側의 hegemon을 美國이 排他的으로 掌握하고 있던 時期에는 언제나 UN에서의 多數의 支持를 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그다지 큰 努力을 들이지 않고도 UN을 통한 外交의 目的을 달성될 수 있었다.

이 時期에 特히 注目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第15次 UN총회가 열린 1960年 以前에는 옵서브 資格에서나마 유엔 총회에 代表團도 파견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主導的 努力 없이도 유엔을 통한 우리의 外交 目的은 達成될 수 있었던 것이다.

法理論的 見地에서 보면 韓半島의 統一促進機構로서의 언커크(UNCURK)는 주어진 目的이 達成되지 않는 限 그 任務와 役割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韓半島의 平和回復 및 安全維持 機構으로서의 유엔軍 司令部(UNC)는 現在 유엔軍 司令官을 一方

당事者로 하여 체결된 韓國 休戰協定이 消滅하거나 아니면 當事者 間의 政府的 水準의 새로운 協定中의 規定에 의하여 明確히 代換 될때까지는 韓國 政府의 要請이 없는 한 결코 해체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法 理論的 觀点이 그대로 通用되고 辨駁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엔과의 관계에서 特別한 主導的 努力 없이도 유엔의 한반도에 대한 政治的 및 軍事적 介入을 환영한다는 意思表示 만으로도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事實 우리 나라는 韓國問題의 유엔 討議를 延期시키는 政策을 선택한 第26次 및 第27次 總會以前 까지만 해도 UN에 관련된 對外活動에서 獨自의 外交政策 概念을 定立하지 않았고 다만 美國의 對韓政策을 디딤틀로 하는 友邦中心의 外交 交渉에 의하여 外交目的을 達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지난 4 반세기 동안의 우리의 外交는 그 目標과 方向을 변경시키지 않고도 비교적 安易한 條件에서 展開될 수 있었다.

勿論 유엔을 통한 統一 接近에 있어서는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런대로 우리 政府의 正統性 維持에는 寄與를 해 왔다.

더우기 UN을 통한 安全 維持는 가장 實質的 成果로 보아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면서 국제정세는 급격히 變動했고 이에 併行하여 유엔 內部情勢도 아울러 變化했다.

이같은 정세 변화는 우리와 유엔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을 根本의으로 再定義해야 할 狀況을 造成했다.

이젠 유엔은 그 기능과 성격이 변화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기왕에 견지해온 立場을 고수 하기도 힘들 뿐더러 設使 固守한다고 해도 實益이 없는 段階에 到達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對 UN外交의 새로운 課題가 있는 것이다.

모든 現實的 그리고 合理的 外交에서는 國際정세 변화에 맞춘 外交 戰略의 현실적 再調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不幸히도 우리의 對 UN外交는 冷戰時에 形成된 諸 假定을 能率的으로 變化시키는데 消極的이었다.

이같은 消極性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취약한 國力과 特異한 地政學的 位置에 기인한다.

그러나 유엔 内部情勢를 觀望해 볼때 유엔이 創設初期에 特別 美國의 絶대적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한반도 사태에 대한 계 설정이 現在 또는 未來에 있어서 계수 有效할 것이라는 假定에 立脚해서 UN外交가 展開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하다.

國際聯合이 40年度末에 UN이 해결해야 할 목적 과제로 설정한 한국의 統一問題도 이제는 유엔이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변화된지 오래다.

UN 총회는 한국 통일문제에 관한 권고를 과거 현재 未來를 통해 北韓에게 受諾시킬 能力이 없을 뿐더러 設使 北韓이 이물 現時點에서 受諾한다고 해도 한반도에 대한 UN의 目的을 實現

시킬 機會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던 것이다.

적어도 한국통일에 관한 유엔의 目的이 額面 그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現在 南北韓에 存在하는 体制의 差異, 理念의 差異, 軍事의 對峙狀態, 그리고 래목은 敵對意識이 南北韓이 統一에 관한 유엔의 권고 即 유엔 감시하의 南北韓 토착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안을 수락하는 即時로 하나의 奇蹟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될 수 있는 可能性은 해방직후의 2, 3年間을 除外한다면 現在 또는 未來에 있어 전혀 없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또 유엔이 우리에게 부여한 唯一合法性의 名分도 마찬가지이다.

政府樹立 直後에 있어서는 이 名分이 우리 政府의 正統性의 根拠였으나, 이제는 이 名分이 없더라도 遼東에서 우리 政府가 「있어야 할 政府」임을 否認할 아무런 根拠가 없으며 더우기 유엔총회가 회원국 보편주의를 대세취 平權애호국과 침략자를 엄격히 구별하던 初期의 理性을 상실하고 지구상에서 일정한 拠點과 住民을 가지고 統治秩序를 유지하는 모든 形態의 政治 集團에 門戶를 開放하는 것이 유엔의 目的達成에 有益하다고 主張하는 限 유엔총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合法性의 名分은 이를 아무리 美化한다고 해도 일종의 回顧的 特權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유엔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有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유엔군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유지 기능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기능도 현재 그 성격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의 유엔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유엔 자체의 政策的 需要에 起因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위요한 極東 政治 (Far Eastern Subsystem) 의 수요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 소련, 中共, 日本을 主要 行爲考로 하는 極東情勢는 歐洲情勢와는 달리 高度로 不安定性을 示顯하고 있다.

中共과 소련은 戰爭一步前의 對立關係에 있으며 日本은 경제 大國으로 成長했지만 그 경제력을 中蘇關係를 조정할만큼 強力한 군사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고, 한편 미국, 소련, 中공은 日本의 군사대국化를 억제하는데 잠정적으로 이해의 一致를 보고 있다.

이같은 정세하에서 미국이 유엔軍의 名目으로 活動하고 있는 미군을 한국을 비롯한 國동에서 철수시킬 경우 힘의 空白이 생길것은 自明한 理致이다.

만일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소련은 對中共戰에 對備, 海軍力의 우세를 유지키 위해 東海, 南海, 黃海, 南支那海에 進出할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은 勿論이거니와 日本과 中共의 安全이 위협 받을 것이며 결국 아시아 정세는 소련이 주도하는 아시아 集團 安保構想에 의하여 左右될 것이다.

이러한 狀況은 太平洋 國家로서의 美國의 利益에 反한 本만 아

나타 나고 中共의 利益에도 反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韓半島에 UN軍의 이름으로 活動하는 미군의 存在에 대해서는 日本이나 中共이 現實的 次元에서 긍정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은 극동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셈이며 大韓民國의 地政學的 位置는 平和維持의 지렛대라는 점에서 그 戰略的 位置가 자못 중요한 것이다.

이 경우 UN軍의 이름이 아닌 미군의 이름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UN軍의 名稱이 所屬되는 것은 美·日 兩國의 國內 與 論上의 考慮에 起因하는 것이다.

美軍이 韓國과 日本 領土를 軍事基地로 使用할 경우 한국과 日本 與論은 美軍이 UN軍으로 活動할 때 이를 묵인하기가 용이한 것이며 美國內 與論도 平凡한 海外 介入을 反對하나 유엔 이름하의 美軍의 아시아 주둔에 대해서는 反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이같은 배경 평가에서 南韓미군의 유엔군 使用 금지와 休戰協定の 平和 協定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여 미군철수를 노리는 성세를 유엔총회 中心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군의 설치는 안보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의 결성 사항은 아니며 총회가 안보리에 유엔군 철수 또는 해체를 申의해도 強大國 論理가 反映되는 安保理에서 미국은 이 건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UN의 法論理이다.

따라서 共產側의 유엔軍 철수기도가 주요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세가 전개되어야 한다.

즉 中·蘇關係가 安定化되고 日本이 中·蘇와 맞서 遠東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짐으로써, 극동에서의 미국의 존재와 역할을 必髮로 하지 않을 狀態가 造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軍事 大國化를 美·中·蘇가 反對하고 또 미국이 中·蘇間의 對立 激化를 特別히 反對할 條件이 성숙되지 않는 限 미국의 韓國에 대한 密着 防衛體制는 當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우리는 지난 기간동안 한국과 UN과의 관계를 아같이 명철히 客觀化하는 努力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冷戰의 論理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결과 우리는 UN과 한국간에 形成된 既存 立場을 固守하기 위해 적지않은 外交的 負擔을 지물해야 했다.

우리가 支拂해야 할 負擔과 強大國이 支拂해야 할 負擔을 엄격히 區別하지 못했고 또 UN과 한국과의 관계를 從來대로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國民的 實利가 무엇인가를 明確히 밝히지도 못했다.

또한 우리는 변화된 內外 情勢속에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目標과 달성할 수 있는 目標을 구별하지도 않았고 구별하려고도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極東에 突出해 있

는 唯一한 冷戰國家로 평가되어 이미지 크라이시스 (Image Crisis) 에 직면 하기도 했고 한국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해 不必要한 努力을 경주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 세계서는 유엔이 신격화 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必要도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극동평화의 지렛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戰略的 重要性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安全과 統一을 成就할 수 있는 現實的 代案을 우리 外交의 能力內에서 적극 개발하고 추구해야 할 立場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 立場에서 出發하여 韓國은 今年 第 28 次 U N 總會에 臨하고 있다.

韓國의 友邦들이 今年度 9 月 11 日 U N 事務局에 접수시킨 兩方側 決議案을 보면

(1) 韓半島의 긴장을 완화하고 平和的 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南北韓의 對話를 환영하며 이 對話가 성공하기를 希望한다.

(2) 유엔은 언커크의 자진해체결정을 지지한다.

(3) 유엔은 보편성원칙에 입각하여 南北韓이 한반도의 平和를 증진시키고 平和적 統일을 촉진시킬 수단으로 유엔에 동시가입 하는 것을 지지한다.

(4)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平和유지와 한국정전협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인 관련당사자들과 適當한 과정을 통해

한국문제를 고려하도록 希望한다는 内容이었다.

한국은 6.23 평화 통일 외교원칙 선언을 통해 지난 4 반세기 동안 유엔전략으로 견지해왔던 한반도에서의 한국 유일 合法性의 주장을 실질상으로 포기하고 南北韓 동시유엔 加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국이 南北韓 동시 유엔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제외하세된 동거중의 하나는 분단국가외 동시 가입을 요구하는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순응하여 한국에 대한 지지범위를 넓혀 공산측이 제기하고 있는 駐韓外國軍 철수안을 否決시키자는 전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언커크의 자진해체를 스스로 결의토록 하여 한국에 설치된 유엔 기관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는 한국은 스스로 그에 대해 해체를 건의할 수 있는 識別力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부각, 會員國家들로 부터 信賴感을 두텁게 하려는 전략을 쫓고 있다.

따라서 제 28次 총회에서 한국이 바라는 것은 주한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알제리아 안을 봉쇄하여 주한 UN군의 존속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北韓의 對UN戰略

北韓政權이 樹立된 以後 지금까지의 北韓外交 政策의 변천과 성을 일렬하면 대체로 5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제 1 단계는 1948年 北韓 政權 樹立時부터 55年 까지의 對蘇 一邊倒接近期, 第 2 段階는 56年부터 61年 까지의 多元的 對外國系 의 接觸期, 第 3 단계는 62年부터 64年까지의 對 中共 偏向期, 第 4 段階는 65年부터 68年 까지의 對蘇關係 改善 및 對中共關係 疎遠期 그리고 第 5 段階는 69年부터 現在까지의 對 中蘇同時的 接近 및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期이다.

이처럼 北韓의 對外政策을 한마디로 소련과 中共에 接近과 疎遠을 反復하는 政策이었으며 따라서 對外政策의 基軸을 對 中·蘇外交에 두어져 왔다.

政權樹立 後부터 50年代에 걸쳐 對中 蘇外交를 中心으로 對 共產圈外交에 注力하여 온 北韓은 60年代에 접어들어 中 蘇間 對立의 激化 亞 阿諸國의 國際舞台에의 大舉 進出과 國際地位向上에 다가 61年 第 15 次 UN 總會에서의 南北韓 同時UN 招請문제에 대한 最初의 學論등을 계기로 하여 外交活動의 積極的인 展開가 要請됨에 따라 이른바 反帝 反殖民 民族解放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亞·阿·中 南美 諸國에 대한 浸透外交를 本格化 하여 多元的 對外接觸에 滿心하였다.

그리하여 中·蘇間 對立의 渦中에서 66年 8月 소위 自主路線을 宣稱한 北韓은 對 中·蘇關係에 있어서 中立을 維持함과 同時에 中立 諸國은 勿論 自由陣營 諸國에 加자 外交的 浸透努力을 傾注해 왔다.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共產圈의 多元化 美·中共의 和解 및 關

係改善, 美·蘇의 平和共存 體制化 및 協調體制 구축 그리고 日·中共의 關係正常化 등 緊張緩和와 勢力關係의 構造的 改編이라는 國際情勢의 흐름에 副應하기 위하여 自主와 實利에 立脚한 多邊外交의 積極的 展開와 아울러 平和指向的 對外姿勢를 노골화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北韓은 對共產圈 外交對中立國外交, 對西方圈外交를 同時的으로 併行해 나가는 廣範圍한 多邊外交를 指向하고 있다.

그래서 北韓의 앞으로 「南北韓에 대해 다같이 公平한 政策을 適用하려는 모든 資本主義國家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用意가 있다」는 闡明은 對西方國家 門戶開放 政策을 펴 나가겠다는 것임은 勿論 實利外交으로써 새로운 國際的 狀況에 對処코자 하는 것임을 意味한다.

이것은 또한 어느 면에서 앞으로 北韓이 日本은 勿論이거니와 美國에 까지 柔軟한 外交의 姿勢를 取할 것을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北韓外交政策의 基本路線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즉 (1)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에 立脚하여 共產陣營의 紐帶 強化와 相互 協調 및 親善 關係의 發展

(2)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國家들과의 平和的 共存에 대한 國際的 原則에 立脚한 友邦的 連繫설정

(3) 亞·阿·中南美 諸國의 反帝 反植民 民族解放斗争 支援과 이

들 民族主義的 獨立國家들과의 友好關係 樹立

(4) 友好協調的 資本主義 諸國과의 外交關係 設定과 經濟 文化 交流의 推進 등이다.

이러한 北韓의 對外基本路線의 一環으로서의 對UN政策은 한마디로 駐韓UN軍撤收, 언커크解體 그리고 한국문제에 대한 UN 干渉 排除를 貫徹시키는 것으로서 그동안 이러한 北韓의 對UN政策은 해마다 UN총회에서 소련을 비롯한 共產諸國과 一部 非同盟 中立國의 共同決議案으로서 具體化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문제를 UN에서 分離시키는 것을 傳統的 對UN政策으로 삼아온 北韓이 這間 UN總會에서 한국문제가 거론되는 경우 無條件 參席하겠다는 主張도 實은 한국문제를 UN에서 論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제에 UN이 一切 干渉하지 말라는 要求를 實現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北韓은 한국문제는 UN헌장 제2조 7항과 제107條에 의거하여 民族内部 문제이며 建後 처리문제라고 주장하면서 UN의 對 한국문제 干渉를 排除하여 왔던 것이다.

오늘날 北韓의 對UN政策에 있어 특히 南北韓 同時加入問題에 관한 政策에 있어서는 分明히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月 中旬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한 基本的 方針은 未定인 狀態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 6月 15日 金日成은 UN加入問題에 관하여 UN加入 및 두個의 韓國諸問題에 대해선 우리들의 最終的인 方針이 決定되

어 있지 않으며 이는 今後 檢討될 余地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UN 傘下의 여러 국제기구에 옵저브로서 代表를 보낼 생각이나 단지 UN에 加盟할 것인지의 與否는 別個의 問題이며 UN에 있어 한반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未解決問題가 있으므로 일단 上程되던 北韓代表가 領土의 權利를 가지고 發言하지 않으면 안된다.

勿論 우리는 두個의 한국으로 永久히 分裂되는 것은 反對하나 現實의인 두個의 分裂狀態下에서 北韓이 積極의인 國際活動을 해서 안될 理由는 없으며 한반도가 永久히 두個로 分裂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를 反對하는 立場에서 慎重히 研究해야 할 것이다 라고 言及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6月 23日 北韓은 한국의 6.23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에 대하여 即刻的으로 猛駁하면서 金日成은 所謂 「平和統一五大綱領」이란 것을 내세워 南北間 同時 UN加入을 反對하는 態度를 明白히 하였다.

한국의 南北間 同時 UN加入 및 同時 UN招請 不反對 宣言에 대하여 金日成은 「우리는 UN에 南北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主張하며 나라의 統一이 이루어지기 前에 UN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南北聯邦制라도 實現한 다음 高麗연방공화국의 國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즉 南北이 각각 UN에 加入하자는 한국의 意의는 통일을 원하

지 않고 분단을 고정화 시키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은 南北韓 同時 UN 加入問題에 대하여 두개의 한국을 永統化한다는 表面上의 이유를 내세워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同時 UN 招請 및 UN 勸導團 派遣은 同時 UN 加入問題와는 別個의 것이라는 主張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加入해 있는 UN 전문기구의 하나인 WHO에 지난 5월 이미 加入한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UN 傘下 여러 기구에도 加入하겠다고 公言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北韓의 對 UN 外交의 二律背反性이 있다고 할 것이며 對 UN 外交에 있어 北韓은 兩面戰術로 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벌써 北韓은 한국이 UN 加入을 申請한 뒤를 이어 49年 2月과 52年 1月 두차례에 걸쳐 加入 申請했던 事實과 諜報이 57年과 58년에 남북한 同時 UN 加入案을 提出했던 事實 그리고 그동안 北韓이 계속 韓國과 동등한 國際的 地位確保 및 두개의 한국을 翫책하여 온 事實등을 감안할때 오늘날 北韓의 對 UN 外交의 二律背反性은 더욱 明白해 진다.

더우기 UN에서 한국문제 討議時 北韓代表가 領土의 權利를 가져고 発言해야한다고 主張한 것은 國際的 現狀固定化 추세와 環境을 고려하여 한반도에서의 2개의 實在를 前提로 한 것임을 北韓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北韓의 對 UN 外交의 兩面戰術의 性格은 더 한層 浮刻되고 있다.

어디만 北韓의 基本立場은 第28次 UN總會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卽 北韓側 立場을 反映한 共產側의 알제리아 案의 內容은 (1) 언커크 해체

(2) 駐韓外軍의 유엔旗 使用 철폐

(3) 유엔군 司令部 解体

(4) 駐韓外軍의 全面철수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북한이 상기 알제리아 案에서 南北韓 同時UN加入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바 추측컨대 이것은 北韓側 立場으로 볼때 UN同時加入이 駐韓UN軍의 존속을 묵인 한다는 逆效果를 낼 우려가 있음을 감안, 駐韓UN軍이 해체되기 以前에는 UN加入을 보류하겠다는 戰略戰術에서 取하여진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 小 結 論

結論的으로 南北韓의 對UN戰略의 比較 分析의 土台위에서 今年 第28次 UN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를 強大國의 立場과 聯関하여 展望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가 일반적으로는 東西兩陣營間의 긴장완화에 저해 작용을 할 요소를 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美·日·蘇·中共 등 한반도 문제에 역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強大國들 間에 不和를 조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특히 UN軍 이름으로 주둔하고 있는 駐韓美軍의 철수문제가 유엔에서 대두될 경우 美日의 太平洋 安保와 직결되는 문제인 고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에 족하리라고 본다.

문제가 이와같이 심각하니 만큼 強大國들 間에는 幕後協商의 기운이 일어 나고 있는것 같다.

우선 強大國家들의 南北韓문제에 대한 基本戰略은 이 문제가 UN에서 激論을 일으켜 東西間에 不和를 조성하는 것으로 飛化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있는것 같다.

특히 美國의 키신저 國務長官은 상기의 強大國間의 분위기를 잘 포착하여 한국문제에 대한 그의 立場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키신저 長官은 9月 27日 UN 本部의 美國代表部에서 열린 記者會見을 통해 UN에서 한국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 對立을 피하기 위해 한국문제를 UN 밖에서 관계국들과 협의할

각이 있음을 밝히면서 모든 문제에 있어 個別外交가 필요하다고
조했다.

이것은 바로 한국문제가 對決의 흑백계가 되지 않도록 그의 長
技인 個別·外交術을 發揮 強大國間의 幕後協商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方針을 시사한 것이 分明하다.

6. 유엔軍撤収 또는 解体時의 問題點

第 25 次 유엔 總會에서 南北韓은 韓半島에서 유엔軍의 撤収問題를 中心으로 正면對決하고 있다.

韓國은 西方側을 通하여 (韓國의 平和保障과 統一促進에 관한 決議案)을 提出하였으며 北韓側은 共產側을 通하여 이른바 「韓半島의 自由的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한 有利단 條件의 造成」이라는 決議案을 提出하였다. 西方側決議案은 前文에서 유엔憲章精神에 立脚

① 유엔은 韓半島에서 平和와 安全保障을 達成할 繼續的任務을 갖고 있음을 確認하고 ② 7. 4 南北共同聲明에 滿足하며 ③ 南北이 유엔體制속에 있음을 留意하고 ④ 「언커크」報告書를 주시하나 韓國의 緊張狀態는 완전히 除去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休戰協定이 아직 必須不可欠한 必態임에 注意를 환기하고 이어서 本案에서 ① 南北對話를 관영하고 이 對話가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를 希望하며 ② 「언커크」의 自進解體를 決議한 「언커크」報告書를 承認하고 ③ 普遍性原則에 따라 平和와 安全을 增進하고, 平和統一의 目的을 達成하는 手段으로 南北이 같이 유엔에 加入할 수 있기를 希望하며 ④ 安保理事會는 停戰協定의 繼續固守, 韓半島에 平和와 安全이 完全保障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 關係當事國과 協議하여 韓國問題를 고려해 주기를 希望한다는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以上決議案의 內容은 ① 「언커크」解體同意, ② 유엔 同時加入권장 ③ 유엔軍 繼續駐韓 및 南北對話支持등이다.

한편 共產側決議案은 그 前文에서 ①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反對하면서 單一國家로서의 유엔加入 ②平和協定締結 ③各分野의 南北交流를 통한 統一促進 및 ④外勢干涉의 排除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共產側案의 主要字樣 및 戰略的目標은 ①「엔코크」解體 ②北韓 外國軍의 「유엔」旗使用禁止와 유엔軍司令部의 解體 및 駐韓 外國軍撤収이다.

以上 西方側과 共產側決議案의 가장 重要한 對立배경 戰略的目標은 西方側決議案은 韓半島의 安全이 保障될 時期까지 駐韓유엔軍은 殘留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共產側決議案은 유엔軍의 撤収를 조기實現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韓國의 對「유엔」戰略의 核心은 駐韓「유엔」軍의 撤収를 反對하는 것이며, 北韓의 力點은 「유엔」軍司令部의 解體와 外軍撤収에 있다. 西方側案은 駐韓「유엔」軍의 唯一한 目的은 韓半島地域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것이며, 그것은 現存하는 休戰協定을 爲해서도 그 機能은 發揮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西方側決議案은 「유엔」軍駐屯問題에 因해서 直接的인 言及을 避하면서 間接的으로 「유엔」軍問題는 總會에서가 아니라 安保理의 討議事項으로 넘긴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總會에서 過熱을 避하고 強大國의 입김이 強한 安保理에서 韓半島의 平和維持라는 次元에서 다루도록 試圖하고 있다.

한편 共產側決議案을 통한 北韓戰略의 本質은 「自主」와 「外勢排擊」의 名分으로 韓國을 國際的으로 孤立시키고 「유엔」軍의

解体와 駐韓美軍撤収의 實現으로 韓國의 安全保障을 相對적으로 弱화시키고자 圖策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以上과 같이 西方側과 共產側決議案이 基本的으로 對決하고 있는 立場에서 西方側은 駐韓外軍의 撤収를 主張하기 앞서 駐韓外軍이 撤収 할 수 있는 條件이 하루속히 韓半島에 造成 될 수 있도록 北韓을 비롯한 蘇聯과 中共에 說得하여야 하며 설사 「유엔」軍撤収問題가 總會에서 可決된 다하여도 이는 勸告의 性格밖에 없으며 「유엔」軍撤収가 實現되려면 安保理의 決定이 있어야 하는데 常任理事國이 拒否權을 行使하면 不可能케 된다. 즉 駐韓「유엔」軍의 撤収가 實現되려면 常任理事國의 意見一致가 이루어지지 않는限 不可能하게 될 것이며 拒否權이라는 最後의 手段을 動員한다는 韓國의 戰略的 目的은 최소한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現在進行되고 있는 極東國際情勢와 南北韓關係의 結核與件에서 考慮해볼때 「유엔」軍撤収내지 「유엔」軍司의 解体問題에 關하여 새로운 觀點에서 問題를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美. 中共間의 和解는 韓國問題의 解決을 促求하고 있다. 美. 中共間의 接近에서 解決되지 않은 課題는 台灣問題와 韓半島問題이다.

72年 美. 中共上海共同聲明에서 美國과 中共은 「台灣」은 中國의 一部라고 表現함으로써 台灣問題解決의 方向을 暗示한바 있으나 韓半島問題는 앞으로 美. 中共接近交渉過程에서 妥結方向을 모색한 것이다. 둘째로 法的側面에서도 北韓과 中共을 一方當事者로 하고 「유엔」軍을 他方當事者라하는 韓國休戰協定の 存在로 말미암아

中共과 「유엔」은 法的意味로 敵對關係에 있다. 따라서 中共이 「유엔」에 加入한 現時點에서는 韓國休戰協定에 關한 모衷妥結을 이룸으로서 中共과 「유엔」간의 潛在的敵對關係를 終結시켜야 한다는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다. 세계로 「유엔」軍司의 解体와 「유엔」軍의 撤收를 要求하는 共產側決議案의 「유엔」總會通過可能性이 增大되고 있는 現實을 無視할 수 없다. 安保理에서 友邦의 拒否權行使의 最終保壘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만일 共產側決議案이 總會에서 通過될 경우 이것이 國際輿論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側에 對한 國際輿論의 惡化는 韓國의 長期的對外政策推進에 결코 좋은 結果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觀點에서 韓半島問題를 爲한 總會內의 動向을 보면 ①北韓「유엔」읍서버團의 得票工作 ②中共의 유엔登場과 亞.阿「불력」에 對한 中共의 影響力作用으로 因한 亞.阿中立「불력」의 親共的 偏向 및 ③美國의 總會에서의 指導役割退潮, 및 友邦間의 共同步調不可能性 尙存 등 西方側決議案通過에 不利한 條件이 造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軍司의 解体와 「유엔」軍의 撤收를 要求하는 北韓側統一戰略을 先制封鎖시킬 戰略的 必要性도 있다. 따라서 以上の 諸般要因을 考慮할 때 現段階에서는 「유엔」軍司의 解体를 저지하고 「유엔軍」의 繼續駐屯을 爲하여 外交的努力을 傾注하여야 함은 當然하나 「유엔軍司」의 解体를 前提로 對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7. 對備策 (韓半島平和定着의 制度化方案)

南北對話의 進展에 따라 韓半島의 平和定着問題가 本格的으로 提起될 것이다.

70年代에 접어들면서 南北韓이 共히 這間의 「對話없는 對決」로 一貫해온 政治的·軍事的競爭秩序를 請算하고 「對話있는 共存의 和解」秩序를 構築해 감으로써 祖國統一課業遂行의 定礎作業을 다할 수 있다는 巨視的目標을 내걸고 南北對話의 序章을 啓는 共同努力이 일단의 結果를 보게된 것인데 이것들을 모두 上記한 바 있듯이 「國際政治的環境變化」의 副産物이라는 事實들을 認識하게 됐다. 그러니까 問題는 앞으로 南北韓의 共同努力方向이 「國際政治的環境變化」를 어떻게 現實的으로 잘 吸收消化 하느냐의 如否가 곧 韓半島運命決定의 一次의인 關鍵이라 말할 수 있겠다. 結局 南北韓의 獨自의 共同努力은 두말할 것도 없이 美·蘇 등 強大國의 韓半島 問題處理를 爲한 大局의 政策定立과 그 實現이 뒤따라야만 南北韓關係의 平和的 解決이 保障된다는 事實과 直結되는 問題이다.

戰後의 韓半島問題는 다 아는 바와같이 「戰後處理問題의 一環으로 出發했다. 特히 「分斷國家問題」라는 側面에서 南北韓 關係設定은 特徵的이었다. 戰後處理問題라 함은 強大國政治의 副産物인 同時에 「戰後」에는 解決을 보아야 한다는 前提下에 「未來問題」로 둘러버린 世界問題라는 뜻이다. 韓半島問題는 그 典型的인 戰後未處理問題의 한 標本이다. 韓半島는 美 蘇가 分割占領政治地域化했고 따라서 그들의 國際策任地域으로 出發한 것이 韓半島의 戰

의 운명決定이다. 때문에 自動的으로 韓半島는 他律的條件賦與에 依從하여 北韓地域에는 蘇聯을 背景勢力으로 한 政治体制·共產政權 秩序가 確立되고 南韓地域에는 美國이 保障하는 自由民主主義政治 体制와 政權史가 定着하게 됐다. 그리하여 「敵對概念」을 두드러지 게 하는 政治「이데올로기」의인 치열한 南北對決과 軍事的競争과 그 리고 戰爭의 體驗을 통해 緊張狀態의 不斷한 高潮現象등등 夾로 韓半島의 悲劇的運命을 播種해왔을뿐 問題의 根本的解決은 束手無策 이었던것이 美·蘇의 對韓半島政策의 策任이요 失策이기도 하다.

이같은 韓半島의 事態發展과 運命決定은 分明히 美·蘇의 世界戰 略 및 對韓半島 政策方向의 反射作用에 의한 結果事項이었다. 그 러니까 冷戰時代에는 철저한 이데올로기 對決戰爭의 尖 兵役割로서 南北關係는 性格지워졌고, 協力的共存秩序 및 現狀維持, 緊張緩和가 支配的인 方向定立時代에는 이에 알맞게끔 南北韓關係의 狀況設定이 他律的으로 條件賦與되가고 있음을 認識해야 할 問題이다.

南北對話의 具現過程이 國際政治的環境變化의 副產物이라면, 韓半島 周邊強大國의 對韓半島政策態度의 基本方向 및 共通分母는 곧 南北 韓關係의 「環境變化」에도 直接的으로 投映되는 問題이다. 따라서 「協力的平和共存」의 推勢는 南北韓間의 異質的體制間의 「協力과 共存」을 促求하는 意味인 것이며, 現像維持策이 強調되는 것은 分 斷韓國의 「現狀凍結」이냐 同時에 「두箇의 韓國」을 暫定的이나마 韓半島에 當분간 定着시킨다는 뜻이 된다. 그리하여 世界 戰略上 의 必要와 理用때문에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要請하고 특히 南

北韓關係의 緊張緩和를 圖謀具現하기 爲하여는 그동안 「兩極化對立 現象」을 지속해온 軍事的競爭狀態를 止揚하고 南北對話의 發展의 持續이 不可避함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이것을 통하여 表現한다면 南北韓間의 體制共存이 至極히 現實的이라는 側面에서 이를 歡迎하는 國際的狀況 設定이라고 看做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南北韓間의 長期的軍事安定策이 實現될것을 要求하고 있으며, 南北韓이 早速히 「互惠的」일 수 있는 安保概念 乃至는 戰略概念이 確立될 것을 列強은 중용하고 있다.

또 互惠協力的基盤에 立脚한 南北韓 一般關係가 定立되어야만 韓半島를 둘러싼 關係強大國間의 勢力均衡 卽 強大國間의 「互惠的權益保全」에 發展의 寄與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南北對話」의 健全한 運用發展을 實現하는 것이 韓半島의 對內外的 戰略環境인 것이다.

가. 6.23 宣言과 南北關係

6.23 平和統一政策宣言은 大韓民國政府가 그 統一政策目標을 達成하기 爲해서 모든 客觀的國家環境變化를 勘案하여 現實接近의 方法으로 民族의 至上課業을 遂行해 나가겠다는 政策姿勢를 明白히 한 것이다. 卽 同政策宣言은 韓半島問題의 國際政治的 性格을 擇하는 한편 南北韓의 自主共同努力에 依한 平和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點이 強調되었다. 또 南北韓基本關係의 基礎定立을 爲한 行動方針闡明이라는 點에서도 6.23 宣言은 重要視되어야 한다.

同 宣言을 總體的으로 分析檢討한다면 다음 몇가지의 重點的考慮
를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卽

(1) 韓半島 問題解決의 現實接近의 方法이 賢明한 政策姿勢임을
밝혔고,

(2) 南北對話의 계속적 努力을 통해 兩體制間의 異質性을 漸進
的으로 融和調頭해 나간다는 基本立場이 淸명된 셈이여,

(3) 獨自의 體制安定과 保全努力이, 南北韓의 發展의 共存·安定·均
衡을 爲해 現實的이고 正當한 自己策任完遂하는 點을 國際社會에
뉘뉘하게 闡明했고

(4)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機構 等에서의 南北韓의 共存協
力態勢增進努力이 統一의 障礙要素를 能動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빠른 길인 同時에

(5) 東西陳營에서의 門戶開放을 비롯하여 互惠原則을 尊重하는
基盤에 立脚한 異質體制國家와의 關係改善·擴大를 爲해 努力할 것
을 淸명하였으며,

(6) 世界潮流인 平和共存原則에 順應하여 外交政策基調로서 平和
普隣外交를 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런데 특히 以上과 같은 巨視的 實踐構想과 統一政策姿勢闡明이
成功的으로 잘 結晶할 수 있는 基本條件으로서 宣言 第2項에 標
榜된 內容은 注目할 價值를 包含하고 있다. 卽

(1) 南北韓間의 平和의 關係維持

(2) 相互間의 內政不干渉

(3) 相互不可侵 등이 急先務임을 態度闡明한 點이다. 이와같은 外交政策態度表明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一國의 實踐의 意志具現을 反映해 놓은 政策宣言이며 政策實施의 行動方針으로 提示된 것이기 때문에 國民과 世界列強・國際社會는 大韓民國의 보다 積極的이고 現實接近的 유연한 姿勢를 「期待」하는 것이며 特히 外交政策 및 外交活動展開面에서 「期待」에 副應해 줄것을 바라게 될것이다. 大韓民國政府가 取하여야 할 对内外的 政策實施는 韓半島周辺 強大國들의 6.23 宣言에 대한 好意的인 對韓政策態度를 우리에게 有利하게 受容하여 이를 活用하는데 힘써야 하며 韓國의 能動的의 與件造成努力에 列強들은 다음과 같은 期待感覺이 強烈하게 作用해울 것이다.

첫째 宣言속에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強調한 만큼 眞正으로 이를 實踐段階에 옮겨놓으려면 平和的體制共存의 第1段階作業으로서 韓半島의 戰爭狀態를 終結시키는 制度化措置와

둘째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渉하지 않아야 한다」는 點이 다점된 만큼 互惠平等原則에 立脚한 南北間 基本關係條約을 締結하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것이고

셋째 「서로 侵略을 하지않기」 爲해서는 南北韓間의 長期的軍事安定策이 圖謀되어야 할뿐아니라, 武力不使用 및 不可侵條約 締結等의 基本問題를 解結해 나가기 爲한 南北韓의 政治的 共同努力이 投入될것을 「期待」하게 되는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早晚間에 南北韓間의 軍事凍結策 乃至는 軍備減縮問題가 舉論되고 相互拘束的인 規制措置가 取해질것이 要請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南北韓平和關係의 定着을 爲한 우리의 主動的의 努力을 促求하는 周邊國家의 與件造成이 특히 南北韓休戰協定の 直接的 當事者일뿐만 아니라 韓半島問題解結의 重心國家인 美·中共 兩國에 활발히 展歸되고 있다. 美·中共은 台灣問題와 더불어 韓國 問題의 解決없이는 相互和解는 不可能하다는 基本的立場뿐만 아니라 유엔軍과 中共軍을 當事者로 包含한 休戰協定の 整理를 通하여 유엔과 中共間의 法的 (De jure) 敵對關係解消必要性 때문에 韓國 問題解決의 必要性을 強力히 意識하게 되었다.

따라서 「키신저」美國務長官은 1973年9月26日 「關係國家間의 조용한 協商」을 歡迎한다」고 發言한바 있으며 1973年10月3日 「포터」美國務省政治擔當次官補는 「유엔軍司令部問題와 關聯, 韓國에서 休戰의 바탕이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美國은 생각하나 「다른 補足할만한 協定에 合意하기를 希望」한다고 發言하였다. 이상과 같이 美國의 立場은 韓國問題에 對한 非關聯國家의 유엔討議보다는 直接的으로 關聯國家—특히 強大國家—의 幕後協商을 強調하고 있는 바 今般 (1973年11月) 「키신저」—周恩來 會談에서 韓國問題에 關한 擧論이 만드시 있었을 것이다. 이 幕後協商에서 台灣駐在 美軍撤収問題와 같이 一韓半島問題의 台灣類型解決示唆— 長期的으로 駐韓美軍의 撤収原則에 合意하였을 可能性이 濃厚하며 보다 短期的으로 美國은 駐韓美軍司令部의 解体를 讓步하고 中共은 駐韓美軍 名目으로서 美籍의 美軍의 韓國駐屯을 諒解하여 南北韓平和協定の 締結에 共通分母를 發見하였을 可能性이 濃厚하다.

한편 其他 周辺強大國의 對韓半島政策도 같은 線에서 諒解가 成
立될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 1973年 11月 8日 「도브리닌」 駐美
蘇大使는 金東祚 駐美韓國大使와 兩國間의 最初非公式의 接觸에서
「東·西獨形式으로 먼저 南北韓間에 合意를 生産한 後 유엔에 加
入하는 것이 正道」라는 意見을 개진 하여 南北韓間의 一次的 打結
을 強調하였다. 따라서 美·蘇·中共 내지 日本 周辺 4大強國은
對韓半島基本政策面에서 同質性을 갖고 있다. 即 우선 美國은 現
段階로서는 韓國에 極東軍事前哨基地의 繼續維持 및 韓半島의 軍事
的安定을 希望하며 蘇聯은 中共牽制와 日本의 再武裝牽制策으로 駐
韓美軍의 役割을 認定하고, 中共도 以上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駐韓
美軍의 撤收는 日本의 對役擔當과 蘇聯의 海上포위를 招來할 可能
性이 濃厚함으로 駐韓美軍에 依한 지지役割을 要求하고 있다. 但
만 아니라 日本도 韓半島의 赤化는 日本의 安保를 威脅하기 때문에
駐韓美軍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周辺四強의 基
本政策은 韓半島에서의 勢力均衡의 維持 및 紛爭要因의 除去로서
現狀固定化를 要求하고 있으며 同時에 4強體制下의 駐韓美軍의 役
割을 是認乃至 默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韓半島平和定着의 必須的 要因으로서 最近 北韓의 動向
도 注目할만하다. 지난 1973年 11月 5日 北韓副外相 鄭準基는
「美軍의 韓半島駐留에 關係없이 平和協定을 締結할 用意가 있음을
表明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北韓의 平和協定締結主張의 基本的
底意는 平和協定中에 外軍撤收條項을 삽입하여 韓半島에서 美軍을

撤收시키려는데 있다. 이같은 観点에서 볼때 鄭의 發言을 表面的으로 解析하면 이것은 北韓의 基本立場의 重大한 修正으로 看做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北韓側非公式 發言은 北韓과 中共間의 韓半島政策上의 主要한 立場의 相異에서 北韓이 中共側에 讓步한 것으로 일단 解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北韓底意의 兩面性을 無視할 수 없다. 北韓의 革命的立場은 駐韓美軍의 撤收를 早期買撤시키는 것이며 現實的立場에서 潛定的으로 駐韓美軍의 駐屯을 認定하는 것으로서 이는 基本的으로 革命的立場인 駐韓美軍의 撤收를 買撤시키기 爲한 單純한 戰術的立場의 變更에 지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駐韓美軍의 韓半島繼續駐屯을 諒解하는 周邊強大國의 動向에 預應하여 우선 韓國을 平和協定締結에 誘導하여 駐韓美軍駐屯의 名分을 退色시킨 後 窮極的으로 美軍撤收를 買撤시키려는 戰略에 不遇하다.

이상 所論한바를 要約하면

(1) 休戰協定當事者인 美國(유엔軍)과 中共間에 駐韓美軍의 駐屯을 前提로 韓半島問題에 關한 妥善打結方案이 成熟하고 있음이 現實이며

(2) 北韓이 美軍駐屯下의 平和協定締結用意을 示唆하므로써 休戰協定을 對置하는 南北韓平和關係定着方案의 打結時期가 臨迫하였고

(3) 따라서 現段階에서는 「유엔」軍의 繼續 駐屯을 爲하여 外交의 努力을 展開하여야 以上の 國際情勢의 變化等 諸般要素를 考慮하여 駐韓유엔軍司令部의 解体를 前提로 對策을 樹立할 必要가 있

으며

(4) 이러한 狀況下에서 韓半島平和關係의 定着과 平和統一促進을 爲한 我側의 能動的 政策對處方案이 要望되고 있다.

나. 北韓의 軍縮 및 平和協定提議의 評價

• 南北韓平和關係定着의 基本方向定立에 앞서 北韓側이 主張해온 軍縮 및 平和協定締結內容을 分析할 必要性이 있다.

北韓은 1954年 6月 15日 「제네바」會議에서 南日이 南北韓軍縮 問題를 提議한 以來 現在까지 繼續 軍縮實現을 主張해오고 있는바 7·4 南北共同聲明以後 代表의 提議는 1973年 3月 15日 第2次 南北 調停委員會에서의 朴성철의 提議이었다.

北韓側의 그동안 提議해온 軍縮內容을 乘約하면 (1)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의 中止 (2) 兵力 10萬以下로 減縮 (3) 武器 및 軍需物資의 반입을 中止하며 (4) 外國軍의 撤収 (5) 平和協定の 締結等 이른바 軍縮 5個項으로서 이들은 國內的으로 軍縮을 實施하고 美軍을 撤収시키며 이들을 保障하기 爲하여 平和協定을 締結하여야 한다는 內容이다.

한편 北韓側은 以上の 包括的인 軍縮 5個項과는 別個로 1956年 6月 25日 人民軍 8萬을 自進縮小하겠다고 宣言한바 있으며 1972年 6月 25日 南北韓軍縮의 實現과 頂上會談의 開催를 提議한바 있으며 南北韓軍隊를 15萬~20萬으로 減軍하자고 提議해온바 있다. 그리고 1973年 4月 5日 美軍撤収條件으로 人民軍을 20萬

以下로 減縮하겠다는 同意를 表明한바 있으며 이보다 조금하여 1972年1月10日 南北不戰宣言 및 武力使用拋棄宣言을 提議해온바 있다.

以上과 같이 北韓側은 軍事費負擔 減輕으로 南北韓의 經濟發展을 圖謀하고 南北間에 理解와 信賴를 增進하며 韓半島平和保障을 名分으로 내세워 南北韓軍縮의 實現을 表面的으로 強力히 主張해 왔다.

한편 北韓側은 軍縮實現의 提議와 더불어 平和協定の 締結을 同時에 強力히 主張해왔다. 1954年6月15日 「제네바」會議에서 南日의 發言以來 現在까지 繼續되어온 平和協定の 締結主張은 7.4 共同聲明以前의 代表的提議는 1972年1月10日 金日成의 「요미우리」新聞 會見內容이며 7.4 共同聲明以後로는 1973年3月18日 第2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의 박성철계 의이고 8.28對話中斷宣言 以後로는 1973年11月5日 鄭準基發言을 들 수 있다. 金日成 會見에서 北韓側은 (1)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轉換시키고 (2) 平和協定締結後 美軍을 撤収시키며 (3) 美軍撤収實現後 軍縮을 實施하자고 平和協定締結必要性을 強調하였다. 그리고 앞서 言及한 바와같이 第2次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時 提議된 軍縮5個項 中에서 平和協定締結主張을 하였으며 한편 鄭準基 發言中에서는 美軍駐屯下에서도 平和協定締結이 可能하다고 그 立場을 크게 變更한바 있다. 以上 北韓의 平和協定締結主張 提議는 戰略戰術上 優先順位上의 變化는 보이고 있으나 內容은 同一한 것이다.

그리고 北韓側은 平和協定の 締結을 主張하면서 南北韓間의 緊張

狀態의 解消, 休戰協定(第4條60項 및 第5條62項)에 따라 南北 韓戰爭狀態의 終結, 그리고 7.4 聲明은 雙方政府間 公式聲明이 아님으로 平和宣言으로 認定할 수 없음을 名分으로 提示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北韓側이 軍縮 및 平和協定の 締結을 主張하는 戰略戰術의 底意는 첫째 國際的 側面에서 (1) 4大強國의 對韓半島現狀固定化 政策에 贊成하여 南北韓의 國際的·國內的 同格化를 企圖하기 爲함이며 (2) 國際緊張緩和潮流에 贊成하여 北韓獨裁 政權의 對外的 「이미지」를 平和的으로 轉換시키고 (3) 美國의 反戰與論 海外介入 縮小政策에 贊成하여 美國의 對韓軍援의 삭감을 容용하고 結局的으로 駐韓美軍의 撤收를 誘導하여 나아가서 休戰協定の 無効化에 따른 駐韓「유엔」軍의 解体를 企圖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對南戰略面에서 보면 (1) 國論分裂에 의한 維新體制의 弱화를 企圖하고 (2) 北韓社會의 軍事體制的 特性에 따라 軍縮에 影響을 받지않고 軍事的潛在力을 確保하고 있는 反面, 韓國의 實質的 軍事力을 一方的으로 弱화시키며 (3) 軍事問題를 提起함으로서 南北對話에 對한 軍부와 對話推進派間의 分裂을 造장시키고 (4) 韓國內의 염전사상을 배태케하여 平和「우-드」造成으로 韓國民의 安保意識의 해를 促進시키려는 戰略的 目的이 있다.

結局 北韓側이 主張하는 軍縮 및 平和協定締結主張의 基本的 底意는 駐韓「유엔」軍 撤收實現으로 韓國의 安保能力을 弱화시키고 (2) 韓國內에 人民革命戰略實現의 素지를 마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我側對策의 基本方向은 (가) 平和協定締結에 集中함으로서 우리의

安保狀況을 저해하는 協商方式을 지양하고 南北韓 一般關係設定으로 誘導하여야 하며 (나) 駐韓美軍의 繼續駐屯을 貫撤시킴으로서 「유엔」憲章體制下에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받고, 同時에 6.23 宣言의 原則에 立脚하여, 平和統一方案을 漸進的으로 具現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다. 休戰協定の 對處問題

以上과 같은 戰略的 觀點下에서 만일 「유엔」軍 司令部가 解体될 경우 具體的으로 제기되는 法的問題를 考慮해 보면 (1) 休戰協定の 効力喪失 可能性이 제기된다. 傳統國際法理論에 의하면 協定當事者 一方이 消滅하면 休戰協定이 無効화된다는 見解가 成立할 수 있으며 (2) 「유엔」이 存續하는 한 署名 當事者가 消滅해도 條約은 有効하다는 見解도 있다. (3) 그리고 協定自体는 有効해도 協定管理者의 消滅로 事實上 死文化된다는 見解도 成立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法的問題는 南北韓의 管轄權觀念 및 範圍의 不確定狀態를 招來할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 軍政當時 南北韓管轄線은 北緯 38 度線으로 諒解하였으나, 休戰以後 軍事分界線이 南北管轄線으로 合意를 보았으며 만일 「유엔」軍이 無條件撤收하고 休戰協定の 地位가 現實的 基礎위에서 明確히 定義되지 않는 限 現在의 南北管轄地域은 實力에 의한 掌握地域일뿐 아무런 法的基礎가 없기 때문에 南北韓間에 領土權分爭이 발발할 可能性을 배태하고

있다. 現在 越南에서는 北緯 17度線의 管轄地域性에 관한 물의가 提起되어 越盟側은 越南侵透를 領土權行使로 主張하고 있다.

1954年 「제네바」協定 및 1973年 「파리」越南平和協定은 17度線이 臨時軍事分界線이거 政治的·領土的 國境線이 아니라고 規定하고 있음을 注目할만하다.

以上の 問題點에 비추어 「유엔」軍의 解体 및 撤収에 先行하여 休戰協定の 繼承에 關한 明確한 法的措置가 이루어져야 하며 南北韓의 管轄地域 및 範圍도 領土權 概念에 符合하도록 定義하는 措置가 先行되어야 한다.

法的側面에 이어 「유엔」軍 解体에 따라 提起되는 重要問題는 韓國의 安保事項이다. 「유엔」軍 解体時 提起되는 韓國의 安保環境은 (1) 유엔軍이 一方的으로 撤収할경우 韓半島의 軍事的均衡이 파괴되어 戰略體制上 海·空軍力을 「유엔」軍에 依存하였던 韓半島 安保體制는 重大한 위협을 받게되며 만일 韓半島軍事情勢가 惡化될 時 「유엔」軍의 再介入이 現安保理의 性格上 現實的으로 困難해질 可能性이 濃厚하다. 그리고 休戰協定の 監視機能이 마비될 것이다.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視委員團의 解体에 따른 當然한 結果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赤化戰略은 활발히 움직여 社會心理的 側面에서 는 韓國의 安全保障에 關한 國內不安이 加重될 것이다.

한편 美國의 極東軍事戰略面에서 考察하면 美國의 國內輿論上 對 韓密着防禦體制 維持에 難관이 造成되며 美國의 日本基地使用이 甚 약富할 것이다. 日本政府의 「유엔」의 平和維持活動支援이라는 名

분이 붕괴되고 美·日 安保條約에 依拠한 것으로 評價되어 自民黨 政府의 立場弱화現像이 招來될 것이다.

以上 「유엔」軍 解体時 提起되는 安保의 狀況을 集約해 보면

(1) 「유엔」軍의 一方的 無條件解体는 現在의 南北關係 및 安保情勢에 비추어 韓半島問題의 解決이 아닌 情勢의 惡化를 招來할 可能性이 濃厚하며 따라서 現段階로서는 「유엔」軍司의 解体를 反對하는 基本政策을 固守하여야 하며 만일 「유엔」軍司 解体案이 總會에서 通過될 경우 安保理에서 友邦의 拒否權 行使를 尊重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엔」軍이 窮極의 撤收하여야 할 對像임을 勘案할 때 合理的 撤軍基盤을 造成하는 對策의 講究가 要望된다.

그리고 「유엔」軍司는 解体하되 韓·美相互防衛條約에 立脚한 美軍의 韓半島繼續駐屯을 考慮하여야 한다. 駐韓美軍은 「유엔」軍과 美軍의 二重身分을 갖고 있는바 韓·美防衛條約 第4條에 따라

「유엔」軍司는 解体하여도 美軍身分으로 駐屯할 수 있는 法理論이 成立되기 때문이다. 今般 「유엔」總會에 提出된 大韓民國覺書는 駐韓美軍의 性格을 「大韓民國」의 要請과 韓·美兩國間의 協定에 의하여 駐屯하는 外國軍으로 規定하고 있다.

끝으로 駐日美軍 및 基地는 「유엔」軍司가 解体되면 美·日安保條約의 「事前協議條項」의 適用밑에 韓半島의 安保維持에 寄與할 可能性을 考慮해야 한다.

「유엔」의 韓半島問題에 關한 關係性維持問題

「유엔」의 1950年 韓國戰爭이 發발된 時點부터 韓半島의 安保

維持에 直接的으로 關聯性을 維持해 왔으며 韓半島의 安全保障의 責任을 맡아왔다. 따라서 「유엔」軍司令部가 無條件解體될 경우 「유엔」과 韓半島問題와의 關係性이 단절되게 된다. 뿐만아니라 單일 南北韓平和協定 乃至 一般關係協定이 締結될 경우 이에 對한 保障問題가 提起된다. 一般的으로 國際的保障形態는 大體로 二個의 類型이 있다. 첫째로 關係地域의 有關強大國의 保障이다. 東·西 獨基本條約은 美·蘇·英·仏等 4大強國이 保障하고 있으며 1954年 「제네바」印支協定은 當時 關聯 9個國이 國際保障하였다. 그리고 1973年 「파리」越南平和協定은 關聯 12個國이 保障하고 있다. 둘째로 安保理中心의 「유엔」保障形態가 있다. 「유엔」軍의 地域平和條約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國際的保障形態面에서 韓半島問題의 現實的保障方法 및 形態를 考慮하여야 한다. 韓半島問題는 1954年 「제네바」會談에서 休戰協定 第4條 60項에 의한 有關強大國의 國際的保障이 強大國間의 意見不一致로 實現되지 못하였다. 現實적으로 韓半島의 安保 및 軍事問題는 有關強大國間에 合意가 成立되어야 單한 解決策을 期待할 수 있는바, 單일 強大國間에 駐韓美軍의 繼續駐屯에 默示的合意가 成立된다 하여도 이것을 公式文書化된 4大國保障의 條約文書에 包含시키기는 困難할 것이다. 왜냐하면 駐韓美軍의 駐屯을 前提로한 4大強國의 公式的保障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엔」軍司令部를 解體하는 立場에서 「유엔」에 對해 「유엔」特別委員會의 設置등 韓半島平和維持에 關한 새로운 負擔을

부여하기는 不可能할것이다. 그러나 「유엔」軍司令部가 解体될 경우 中立國監視委員團의 機能이 마비됨으로 總會는 安保理에 中立國監視委員團을 판장하는 機能을 부여하는 決議案을 採擇하여 韓半島의 安保理가 保障하도록 措置하여야 할것이다. 同時에 韓半島의 安保理를 積極保障하는 方便으로서 南北韓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하여 「유엔」憲章秩序에 편입되어 만일 紛爭이 發生할 경우 「유엔」憲章秩序에 따라 韓半島의 安全을 保障받는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것이다.

라. 南北韓一般關係設定

最近에 紛爭地域에 平和가 定着되는 몇개의 國際秩序가 形成되었다. 東·西獨基本條約의 締結·「파리」越南平和協定の 成立 및 「타오스」聯立政府의 樹立이 그것이다. 이들 3개의 國際平和秩序의 定着은 各各 獨特한 與件 밑에서 獨特한 背景下에 成立되었지만 多같이 韓半島의 平和定着方案研究에 寄與하는바 될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좀더 細密한 研究가 必要할 것이다. 먼저 東·西獨基本條約은 前文과 10個條로 構成되었는바 前文에서 東·西獨은 平和維持의 責任을 擔當하고 「유럽」의 安保理와 緊張緩和에 寄與하며, 現存國境線을 바탕으로 「유럽」國家의 國境不可侵性, 領土 保全·主權의 尊重이 平和의 必需條件이며, 東·西獨間의 武力使用위험금지 등 諸般原則下에 東·西獨은 同業權의 바탕으로 善隣關係를 增進하고 (第1條),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國家의 主權平等, 獨立, 領

土保全, 自決權, 人權擁護, 平等的 原則)을 遵守하녀(第2條), 「유엔」憲章에 따라 平和的方法으로 見解差異를 解決하고 現存國境線의 不可侵性을 認定하녀(第3條) 東·西獨은 相互相對方을 代表할 수 없으며, 東·西獨은 「유럽」의 安保와 協力에 寄與하녀 全般的이고 完全무결한 軍縮下의 國際安保努力지지(第5條), 社内外問題에서 2개의 主權認定(第6條), 東·西獨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實質的 人道主義의 問題를 協議하녀 基本條約의 基礎위에서 經濟·科學·技術·交通·郵便·保健·文化·「스포츠」·環境保護等 諸般分野의 交流를 實現하고(第7條), 東·西獨은 常駐代表部를 設置하녀(第8條) 其他 批准條項으로 構成되었다.

以上과 같이 東·西獨 基本條約은 分斷國 相互間關係正常化의 模型을 이루고 있는바 東·西獨 基本條約의 特性은 첫째로 東·西獨은 不可侵·國內問題不干涉·國境線認定等 牛個의 主權國家를 사실상 認定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諸般交流의 實現으로 相互間 實質的인 關係性을 維持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常駐代表部의 交換으로 協調 機構를 維持하고 있다.

둘째로 統一問題를 完全排除하여 철저히 共存體制를 維持하고 있으며 셋째로 「유럽」의 全般的인 軍縮을 지지한다고 表明하고 東·西獨間의 現安保體制의 不干涉立場을 明白히 하고있다. 끝으로 「유엔」憲章의 原則遵守를 明記함으로써 東·西獨 同時「유엔」加入의 基礎을 造成하고 있다.

越南平和協定은 前文과 8個章 23個條로 構成되었다. 前文에서

戰爭終息과 平和와복의 原則을 밝히고 第1章 國民의 權利項에서 1954年 「제네바」協定에 의거 「베트남」의 獨立・主權・統一・領土統合邊重을 明示하고 第2章 敵對關係의 終息 및 撤軍項에서 現狀凍結休戰・外國軍 및 外國基地의 撤收・外國軍事物資・人員의 도입 금지・共同軍事委員會 및 國際休戰監視委員會의 休戰監視등을 規定하고 있다. 第3章에서 포로교환문제를 취급하고 第4章 南部越南人民의 自決權行使項에서 民族和解團結機構의 主管下에 總選舉實施로 越南의 政治의 將來決定原則을 明示하고 있다. 그리고 第5章 越南統一 및 南北越南關係項目에서 外勢의 干涉없이 平和의이내 段階의 方法에 의한 統一原則을 제시하고 第17度線은 潛定的인 軍事分界線으로 政治的・領土의境界線이 아님을 밝히고 非武裝地帶의 邊重을 規定하고 있다. 第6章 共同軍事委員會 및 國際休戰監視를 規定하고 第7章에서 「크메르」와 「라오스」問題, 끝으로 第8章에서 美越盟關係의 和解를 規定하고 있다.

이상 파리越南平和協定은 東・西對基本條約과는 달리 名分上 統一指向의임을 注目할만하다. 그러나 具體的統一方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非武裝地帶를 尊重함으로써 現實的으로 分斷을 認定하고 있다. 그리고 또하나는 形式上戰爭終結을 위한 平和協定이나 政治事項을 包含함으로써 一種의 南北越南間의 基本關係를 規定한 느낌마저든다.

「라오스」平和協定은 前文・5個部 14個條로 構成되었다. 前文에서 戰爭終息平和回復・國家의 統一・平和・獨立・民主・繁榮의 原則을 規定하고 第1部 一般原則部分에서 民族의 基本權利를 尊重하고, 獨立・平和・中立의 外交의 基本原則을 陳明하였으며 「라오스」國家問題에 對한 外國干涉의 排除, 民族一致의 精神에 立脚한 兩分된 內政問題의 解決, 및 人民의 民主主義의 自由守護를 明示하고 있다.

第2部 軍事條項에서 現狀凍結休戰 및 外國軍, 基地의 撤收을 規定하고 第3部 政治條項에서 臨時民族聯立政府 및 政治諮員評議會構成, 總選舉에 의한 民族聯立政府樹立등을 규정하였다. 第4部 國際監視委員會의 活動을 위한 合同委員會의 構成 및 第5部 其他批准條項으로 構成되었다.

以上 「라오스」平和協定은 聯立政府樹立에 關한 具體的立案을 明示하고 있으며 특히 共產主義的合作戰述의 模型을 이루고 있다. 即 民族臨時聯立政府樹立에서 民族聯立政府樹立 그리고 共產化의 段階的戰略을 기도하고 있다. 또 民族概念을 「라오스」綜合의 理念的基盤으로 使用하고 있다. 그리고 平和協定속에 軍事問題뿐만아니라 政治問題를 包括的으로 取扱하고 있음도 注目할만하다.

韓半島平和定着의 基本方向

以上 東·西獨基本條約·越南과 「라오스」의 平和協定の 分析을 통하여 얻은 教訓을 基盤으로 韓半島平和定着의 基本方向을 設定해보면

(1) 北韓의 軍事問題解決爲主의 平和協定締結方式을 적극 排除하고 南北關係를 改善하는 包括的인 一般關係(基本關係)를 設定하는 形式으로 誘導하여야 하나

(2) 따라서 北韓이 主張하는 軍事事項에 關한 規定을 一般關係設定의 한 部分으로 極小化시키는 동시에 韓半島軍事安定化를 爲한 原則宣言을 하는 線에서 그리고 主로 統一問題·南北關係改善等에 關한 包括的規定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外型的으로는 休戰協定の 內容을 繼承하고 7.4 共同聲明을 發展, 具體化시키는 形式을 취해야하나 實際內面的으로는 6.23 宣言의 精神과 論理를 具現시켜야 한다. 그리고 (4) 統一意志의 表現으로 統一拋棄印象을 拂拭해야한다. 그리고 (5) 南北相互體制不干渉, 不可

原則을 強力히 反映시켜야 한다.

以上の 基本原則에 立脚하여 南北韓一般關係約定은 序文에서 7.4 共同声明의 繼承・休戰協定の 有効등을 밝히고 第2의 統一條項에서 自主・平和・民族大團結등 統一原則을 明示하여 南北韓民族同質性的의 회복바탕위에서 窮極의으로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總選舉의 實施를 規定하여야 한다. 第3의 南北關係條項에서 (1) 統一政府樹立時까지 暫定的으로 南北韓體制共存을 認定하여 相互不干渉・不可侵 및 유엔同時加入의 實現등을 規定하여야 하며 (2) 相互安保事項不干渉原則을 明示하고 (3) 諸般分野의 南北韓交流를 實現하며 (4) 南北調節委員會를 政府及機構化하고 分科委員會 및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끝으로 第3의 平和維持條項에서 (1)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現狀維持 (2) 軍事停戰委員會의 南北調節委員會軍事分科委員會에로의 吸收 및 軍縮關係의 基本原則을 包含하여야 한다. 그리고 (3) 中立國監視委員會를 「유엔」安保理管轄域에 두고 無力化狀態에 있는 中立國監視委員會의 機能을 회복 強化하여야 한다. (4) 그리고 外國軍撤收問題에 關係는 相互體制不干渉原則과 精神을 安保事項不干渉으로 解釋하여 外國軍撤收問題自体를 默殺할수 있으나 北韓이 外國軍撤收問題에 關係한 言質要求를 固執할 경우, 外國軍의 長期, 段階의 撤收原則을 諒解考慮할수도 있다. 그리고 (5) 韓半島의 非核化原則을 規定한다.

以上은 韓半島平和關係를 定着化하기 爲한 基本方向의 제시에 불과하며 現段階에서는 「유엔」軍司令部解体를 反對하는 基本政策을 固守하여야 하며 만일 「유엔」軍司令部解体에 關係한 決議案이 總會에서 通過될 경우에도 安保理에서 友邦의 拒否權行使를 尊重하여야 하며 만일 美・中共間의 諒解成立等 「유엔」軍司令部解体가 불가피할 경우 「유엔」軍司令部解体의 前提條件으로 韓半島의 安全을 保障하기 爲한 南北韓一般關係의 設定을 貫徹하여야 한다. 그리고 北韓과 平和協定論議에서 駐韓美軍問題가 争點으로 부각시 東・西獨例에 따라 相互安保事項不言及原則을 固守하여야 한다. 또 美國과 「유엔」軍司令部解体協商時, 駐韓美軍駐屯保障 및 相互防衛條約補完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마. 南北軍縮問題

現代「프랑스」의 軍事戰略家의 한사람인 「칼라」將軍은 그의 「核武器와 戰略」에서 現代軍事力을 3大類型으로 分類考察하였다. 第1「카테고리」는 오직 美·蘇만의 軍事力을 指稱하는데 그 役割 機能으로서

(1) 美·蘇는 超強大核戰略能力(第1, 第2打撃戰力能力兼備包含)의 唯一한 保有國이며

(2) 自國의 直接的 安全保障目的의 外의 國外軍事力介入이 可能한 나라이며

(3) 美·蘇雙方은 直接軍事의 衝突을 避한다는 條件下에 互惠的 利益保全에 必要하다고 認定될때 第3國을 犧牲으로 하는 在來式 戰爭方式을 取択하는 때문에

(4) 兩超大國은 自國의 死活問題의 決定的 利害關係打算에 있어서는 對立하지만 第2「카테고리」以下國問題에 對한 政策態度에 있어서는 自國의 「絶對的 壟域化」를 前提로 共通分母를 갖고있고

(5) 따라서 美·蘇의 共通諒解 없이는 第2「카테고리」以下諸國이 結束聯合하여 國外에의 武力介入은 絶對不可能한 것임을 論破하고 있다.

다음, 第2「카테고리」에 屬하는 軍事力에 關하여는 獨自的 能力으로 自國領土防衛가 힘든 나라임을 前提하고

(1) 自國領土 밖에서 軍事的 모험을 벌일만한 軍事力을 保有하지 아니하며 (現在로서는 英·仏의 경우를 指稱)

(2) 오직 自國領土에 對한 核威脅을 防除하고 自衛程度의 미약한 核能力의 保有國家이며

(3) 비록 核保有開發增進을 戒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根本目的은 自衛와 國家의 威信을 確保하기 爲함이며 通常武裝力의 保全은 核戰爭抑止效果를 지키기 爲함이며 國外의 武力介入을 爲한 武裝增大는 너무도 高價의 事業인데

(4) 超大國끼리는 第2「카테고리」以下諸國의 行動自由를 規律하는 때문에 結局 이들 第2「카테고리」에 屬하는 諸國은 美·蘇兩國의 祭物이 되는 경우가 許多한 것임으로 섯불리 모험을 試圖해서는 아니 되며

(5) 특히 第2「카테고리」以下諸國에게는 이미 「戰爭은 他手段에 依한 政治(政策)의 延長·繼續이다」라는 原則은 適用될 수 없으 며

(6) 他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모든 問題의 解決을 爲하여는 武力에 依한 呼訴가 아니라 政治的 行動으로 解決하는 方法을 모색하 는 길만이 가장 重要한 課業으로 남는다는 事實을 看破하고 있다.

끝으로 第3「카테고리」에 屬하는 軍事力群으로서는 核武裝能力에 없는 나라를 말하며 通常武裝國을 通稱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1) 上記한 第1「카테고리」國의 介入에 依하여 運命이 決定되며

(2) 다만 第1「카테고리」國이 第3「카테고리」國郡問題에 對하여 軍事的 最大介入하는 일은 制限要素가 많은 것인데 가령 既往의 韓國戰爭이나 越南戰爭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3) 第3「카테고리」국이라는 東西陣營의 어느 한쪽陣營에 全적으로 加担하여 自己運命을 依託하든지 아니면 戰略環境上 엄정中立의 貫徹이 許用된다든가 하는 경우를 除外한다면 美·蘇雙方의 相互尊重에 의한 裁量에 따라서 第3「카테고리」국의 生存範圍는 保障되는 것이 普通인데

(4) 第3「카테고리」국은 單一大國勢力圈에 從屬되든지 아니면 複數大國勢力의 保障體制에 依存하든지 간에 如何한 경우라도 어느程度國家的 自由行動의 自制와 양보를 強要받는 것이 第3範圍의 宿命이라고 看破하면서 오늘날의 通常武裝力의 意義와 機能役割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集略하고 있다.

- (1) 局地制限戰
- (2) 戰爭抑止力을 效果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手段
- (3) 同盟國軍事力의 總體的 實力發動의 一環(全體의 一部分)으로서의 機能
- (4) 防衛的 軍事力의 主軸으로서 機動戰鬪師團 地上兵團, 戰術空軍 및 沿岸防衛海軍力의 編成을 中心으로
- (5) 地上戰鬪를 爲한 主武器로서의 戰車의 效用價値를 重要視하게 되며
- (6) 自走砲·重砲兵器의 確保가 緊要하고
- (7) 戰法兵器開發幹部要員 訓練戰略概念確立의 問題가 가장 重要한 課題解決의 焦點을 強調했다.

以上에서 考察한 바에 따를것 같으면 現代軍事力의 類型中에서

該國의 軍事力의 位置定立은 第3「카테고리」에 所屬되어 있는 것이 現時點의 正直한 自己意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勿論 北韓의 경우도 例外일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韓半島의 境遇 南北韓이 共히 스스로의 運命을 開拓해 나가는 第一線 責任群象들인 政治家나 軍事的 政策當路者들은 韓半島의 軍事力의 實數値가 現世界政治·軍事秩序에 있어서 무엇을 意味하는지를 正確하게 洞察하고 把握하여 韓半島 實情에 맞는 戰略概念·兵力水準·戰術戰法·武器體系·軍事制度·軍編制樣式·動員體制·兵役制度 등등의 諸般分野에 걸친 「獨立的個性 確立」을 成就하는 것이 責任과 使命完遂의 지름길인 것이다. 이같은 責任賦果中의 가장 時急한 當面課題가 南北韓의 軍備縮小問題를 成功的으로 完結하는 일인 것이다.

지금 第3「카테고리」에 屬하는 國家群 뿐만 아니라 超大國은 超大國대로 第2「카테고리」國은 그들 나름대로 70年代의 軍事的 課題解決을 爲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關해서 眞지한 努力이 傾注되고 있음을 非常한 關心으로 注視해야 할 것이다.

現今의 軍備協商은 二邊變務의 底辺構築이 前題될 때는 協商·交涉의 進行이 比較的 順調로울 수 있으며 複數國家間의 集團的 措置로서의 軍備協商交涉일 경우에는 利害關係의 調整이 複雜多端하기 때문에 그만큼 交涉의 妥結은 至難하고 長期化傾向을 免키 어렵다. 前者의 경우는 지난 SALT를 標本的으로 舉示할 수 있고 後者의 경우는 유럽에 있어서의 「相互均衡兵力減縮(MBFR)의 問題

NATO側에서 MBFR會議開催에 関한 对「과르샤와」側 招請狀을 發
 付하게 였고 1972年 11月21日의 「헬싱」의 「全유럽安保會議 予
 備會談」과 함께 1973年 1月末에는 MBFR 予備會談開催에 合意確
 定을 보았으며 1973年 5月16日에 「비엔나」에서 MBFR 予備交渉
 全体會議가 開催된바 있다. 그런데 지난 5月の 「미엔나」會議에는
 NATO~과르샤와側 雙方의 意見을 折衷勸案했다고 볼 수 있는 「음
 서버」국인 「루마니아」가 MBFR會議를 為한 具體的인 議題를 提
 案한바 있는데 이것은 MBFR가 겪어야할 課題解決의 核心이 무엇
 인가를 짐작하는데 重要한 參考事項이 아닐 수 없다. 即

- (1) 全外國軍撤収를 궁극목표로 하는 兵力減縮의 問題
- (2) 外國軍事基地의 解体問題
- (3) 外國國境沿邊에서의 示威目的으로서의 軍事演習 및 兵力集結의
 停止問題
- (4) 軍事予算削減의 問題(이 問題에 關해서는 극히 最近~9月25
 日 蘇聯에서 「그로미코」外相의 「유엔」總會 演說을 通해 美·蘇·
 英·프랑스 및 中共等 安保理 5大常任理事國들이 自發的으로 自國의
 國防費의 10%를 削減하여 이를 開發途上國에 援助해 주자는 提議
 를 한것과 關聯시켜 볼 때 매우 注目을 끄는 MBFR의 議題選定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5) 核保有國의 保護下에 歐洲各地域에서의 非核地帶設置問題
- (6) 軍備擴充競争中止問題
- (7) 各國軍備削減

(8) 東西軍事불력除去努力 등등이다.

그런데 東西 (NATO 側과 와르샤와條約機構間) 軍事力配備는 적어도 數字上으로는 「全般的 不均衡狀態」인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相互均衡兵力減縮」하자는 交渉會談議題中에는 MBFR 그 自體의 本質的인 基本問題點이 未解決된채 會談이나 交渉에 臨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綜合的으로 染約 點演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即 東西間에는

- (1) 軍事制度・組織上的 差異가 甚大하며 (相互異質性)
- (2) 裝備・武器體系面에서 一致하지 아니하며
- (3) 軍事力의 下部構造가 異質的이고
- (4) 諸般 軍事戰略概念이 非類同이며
- (5) 交渉의 長期化現象을 안고 있고
- (6) 政治的 座標定立 即 政治的 態度決定準備作業이 先決되어야 하는데 東西間의 政治目的과 基本立場의 共通廣場 마련의 定礎作業이 至難課題中의 하나인 때문에
- (7) 우선은 質的 問題보다 量的 問題 특히 計量可能한 順序의 基準으로서의 「兵力」의 減縮問題가 一次的으로 浮刻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MBFR의 實現成功을 爲한 研究關心으로서 그 方法論 必要性 그리고 軍事的・政治的 或은 制度的 接近方法이 試圖되는 가운데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는 形便에 있다. 뿐만 아니라 軍備 協商 交渉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以上에서 본바와 같은 技術的 原則論上・그리고 基準設定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운 點이 介在되는 것이 事實이지만 그러나 「政治的」인 條件造成이 先行・先決하고

또 總體的인 意味의 「戰略的 均衡」이 計算可能할 경우에는 軍備 協商交渉은 意外로 進行될 可能性을 多分히 內包하고 있는 것임을 注意해들 必要도 있다.

그런데 장차 南北韓의 基本關係條約 및 平和協定 或은 韓半島의 戰爭狀態終結을 爲한 어떤 형태로든지 制度化措置가 整備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軍備協商課業은 南北韓間의 軍事關係의 安定基調를 다 지는 南北共通基本要素로서 1次的으로 提起되는 問題이며 韓半島를 둘러싼 周邇 強大國의 他律的 強要事項으로 抬頭될 것이다. 이 경우 南北軍備協商·交渉의 主要 이슈는 亦是 計算的 基本設定이 제일 容易하다고 볼 수 있는 「兵力의 減縮」問題가 第1優先하게 될 것이다. 이에 對備하여 方法論의 모색·兵力減縮의 相互必要性 그리고 接近方法의 몇가지 基準을 中心으로 다음에 略述해 둔다.

그런데 南北韓軍備協商에 臨하는 마당에 있어서 한가지 留意할 일은 韓半島 安全과 平和維持의 「先保障後軍縮原則」을 貫徹한데 對한 基本政策方向이 定立되어야 한다는 點인 것이다. 「先保障」劃 策에 있어서는 4大強國의 政治的·戰略的 意味의 對韓半島平和·安 全을 爲한 責任保障을 爭取하는데 活動力點을 두는 일이겠고 「後 軍縮」問題는 上記와 같은 政治的·戰略的 韓半島與件 造成의 成熟 度에 基礎하여 南北韓間의 軍事安定을 爲한 政治·經濟·軍事上의 戰略的 및 技術的 實務的 問題解決의 方向을 모색해 나가는 일인 것이다.

南北軍縮을 爲한 協商方法으로 考慮할때 相對的 意味에서는 基本

의므로 北韓과의 直接會議·協約·妥協·交涉 등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雙方合議」-勿論 「約束은 遵守되어야 한다」라는 原則을 前提함은 勿論이다. -에 依한 「二邊·雙務的」方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各 自己의 獨特한 實情에 맞는 「自己的 必要」에 依해서 軍縮할 수 있는 이른바 「一方的 獨自裁量」方法이 있는 것이다.

前者의 경우 卽 「二邊雙務的」方法에 의한 軍備協商의 合意成功例는 1972年 12月 美·蘇間의 SALT協定이 典型的인 보기이며 後者 卽 「一方的 獨自裁量」의 方法의 경우는 世界各國의 建軍政策一般이 그러하지만 특히 美國이나 蘇聯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雙方에 의한 合意는 없으면서도 自國의 獨自의 政治的 經濟的 및 軍事科學技術上的 諸般형편을 勘案하여 地上兵力水準을 減縮再調整한 다든지 或은 海外派兵力 및 國內外 基地減縮·閉鎖등을 斷行하는 일, 그리고 動員體制의 自己調整·制度修正(가령 徵兵制에서 志願制로 또는 服務年限의 短縮등등)을 實施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確實히 諸國이 直面하는 國防建軍政策上的 核心은 兵力·武器體系·軍事財政面이라고 볼 때 그 중의 한 構成要素인 「兵力問題」는 自國이 最大限度로 國策上 獨自裁量처분할 수 있는 「土着人力資源」에 依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國內政治的 軍事戰略的 그리고 軍事財政上的 諸形便이 許容하는 實情을 勘案하여 兵力數의 加減·徵募兵率의 調節·將校兵士·下士官 등의 育成配置比率 및 民間軍屬 確保比率을 比較的 自由롭게 政策裁量할 수 있는 分野인 것이다.

그런데 世界 85 個國의 總兵力保有水準은 總平均하여 (特定國의 兵

外) 自國總人口의 約 1%程度를 點하고 있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는데 이는 尙차 南北韓의 「兵力減縮」交涉에 있어서도 基準設定 作業에 重要한 參考資料로 삼을 수 있다. 北韓의 경우는 總人口 對兵力構成地가 約 3%인데 韓國은 2%이다. 이를 各 1%線으로 줄인다면 南北의 均衡兵力數字는 自動的으로 計算되는 것이다.

다음은 南北軍縮協商·交涉具現의 必要與否이다.

한마디로 政治的·經濟的 軍事의 理由때문에 南北의 軍縮實現은 南北韓에 共通된 必要性을 안고 있다. 對內的 必要性은 主로 經濟的·軍事의 理由때문이며 對外的 必要性에 있어서도 軍援의 制約·軍事財政能力의 非獨立性, 그리고 強大國의 對韓半島戰略概念上의 要請事項때문에 南北軍縮協商交涉은 前進的 政策態度를 取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었다.

勿論 MB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南北軍縮會談을 통해 合理的으로 定立處理되어야 할 一般的 考慮要素나 戰略的 考慮事項은 간단하고 容易한 일은 아니다. 問題點으로서는 가령

(1) 軍事組織編制樣式의 基本的 異質性問題 即 國軍組織과 人民軍組織·編制上의 相異性은 調和基準을 創出하기란 至極히 困難한 課題中的의 하나이다.

(2) 韓國의 美國武器體系·北韓의 中·蘇 基本的으로는 蘇聯武器體系間의 不一致 문제인데 이 武器體系間의 均衡基準創出問題도 간단치 않다. 一例로 北韓의 中·小型高速艦艇類는 美國의 普偏化된 武器體系가 아닌 것을 想起할 수 있다.

(3) 軍隊組織의 下部構造 특히 政治思想 幹部化問題 黨軍性格 등 國軍과 人民軍組織·運用·編制間의 異質性은 엄청나다.

(4) 戰略概念軍事 敎理 등 諸般局面에 있어 同質性을 찾기 힘들다.

(5) 協商·交涉 合意過程은 長期化될 性格을 지니고 있다.

(6) 戰術戰法·訓練敎育上의 異質性도 問題點의 하나이다.

(7) 國防予算編成·構造上의 特徵도 非同質類型이라는 問題點이 심각하다.

其外에도 平和維持 相互監視機構·查察方法·軍需產業問題 등 實로 軍備縮小協商成就作業이란 至難한 國家事業임에 틀림이 없다.

다음은 南北軍縮協商·交涉을 爲한 接近方法을 軍事的·政治的·制度的 側面에서 試論하겠다.

먼저 軍事的 接近方法에는

(1) 南北韓 長期軍事安定上 均衡兵力 維持의 政治的 必要性이 大 前題되어야 하며

(2) 裝備武器體系의 「均衡的 現狀凍結」-가령 國軍現代化計劃의 早期目標完結같은것-이 貫徹되어야 하고

(3) 防衛負擔(軍事財政)을 遊減할 수 있는 變務的 方法이 모색 되어야 하며

(4) 「先保障後軍縮」原則을 實現할 수 있는 南北共同努力과

(5) 共同查察合同監視制의 協定·合意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6) 兵力減縮上의 均衡基準定立·合意가 必要한 것인데 이 경우

總人口能力對 兵力構成比를 勸柔하는 것이 合理的인 方法의 하나이다.

다음은 政治的 解決接近方法이다. 南北雙方은 彼此의 軍事力이 相互關係의 政治的 安全保障機能의 担保임을 諒解하고 어디까지나 無限定한 競爭的 對決姿勢보다는 「互惠的 安保概念」을 導入創出하는데 共同努力의 核心을 集中해야 하며 이를 爲하여

(1) 實質的 緊張緩和를 爲한 軍縮協商·交涉의 巨視的·長期的 方向感覺을 設定해 주어야 하며

(2) 兵力均衡策 모색에 있어서 可及的이면 「一方的 獨自裁量」原則을 相互尊重해 줄 수 있는 方案이 創出될 것이 바람직 한데

(3) 政治的 接近方法은 軍事的 接近方法보다 훨씬 「플렉시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最大로 發動勸案하여

(4) 兵力水準 軍事基地·兵力移動·監視查察·軍事演習·軍事代表相互 交流 및 軍事科學技術情報交換等등의 諸般問題에 걸친 巨視的 伸縮性原理를 살려나가는 方向指針을 定立해 주는데 있는 것이겠다.

끝으로 制度機構上的 接近方法을 略記하였다. 이 方法은 軍縮實現의 軌道役割을 担当하는 方法으로 看做할 수 있다.

變方的 協定の 締結이나 또는 地域安保會議體構成 乃至는 集團的 安保措置機構의 創設을 통한 方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方法論을 取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關係強大國에게 實質的인 協定遵守 및 平和維持를 保障하는 共同監視責任을 賦果하므로써 軍事安定·均衡維持의 實効를 거둘 수 있는 方法의 하나이다.

制度·機構上的 接近方法은 變方立場間의 意見膠着을 打開해 줄 수 있는 「차널」로서 機能할 수 있으며 특히 軍備協商에 있어서

量大難關으로 봉착하는 것이 常例인 「相互監視·共同查察保障」
機能을 現實的 方法으로 擴大圖謀할 수 있는 特徵을 갖는 것이
別度 機構上의 軍縮協商接近方法이다.

要컨데 強大國에 依한 集團의 共同保障없는 現今의 群小國間의
軍備協商協定은 現實적으로 無意味할 뿐만 아니라 向後 70年代 全
般을 通해 보드라도 軍備의 相互規制를 爲한 制度與件이랄 수 있
는 「共同監視 查察保障」措置를 取하는데 失敗한다면 世界는 다시
軍縮協商이 아니라 새로운 軍備競争 및 軍事「불력形成의 修羅場이
될 潛在要因을 充分히 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南北韓의 軍備協商問題는 問題 그 自体로 보면
「軍事的」인 性格의 것인데도 問題解決의 關鍵的 方向設定은 「政
治的」方法에 의해 處理되는 것이 「現實的」이라는 問題意識의 把
握을 巢約해 주고 있다고 할만하다. 그러기 때문에 今世紀의
「地上平和」는 樂觀과 悲觀의 半半展望속에 있으며 人類는 尙상
戰爭과 平和의 歧路에서 서성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